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제1장

공동주택 개인정보 관련 주요 이슈 7

제2장

공동주택 개인정보 상담사례 17

- I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18
- II 주차관리 28
- III 관리비 및 회계 38
- IV 아파트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게시판 50
- V 동대표 선거 68
- VI 관리규약 및 각종 문서·동의서·계약서의 공개·열람 등 78
- VII 주체별 개인정보의 처리 90
- VIII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112
- IX 기타 116

제3장

관리규약 제·개정 시 권고사항 127

부 록 131

CONTENTS

제1장

공동주택 개인정보 관련 주요 이슈 · 7

제2장

공동주택 개인정보 상당사례 · 17

I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_18

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문서)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19
2.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녹화물, 녹음물)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20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게 회의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지21
4. 입주민의 회의록 열람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22
5. 입주민의 회의록 열람 시, 발언내용에 대한 발언자 성명 공개 가능 여부 등24
6. 법원의 아파트 CCTV 녹화영상 제출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25

II

주차관리_28

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의 주차관련 자료를 보관해도 되는지29
2. 입주민 차량에 부착하는 차량식별카드에 동, 호수 등을 기재해도 되는지31
3. 전 주민의 차량등록현황을 관리사무소가 입주자대표회의(동대표 등)에게 제공해도 되는지32
4. 아파트內 상가상인이 주차장 이용을 위해 자동차등록증,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때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35

III

관리비 및 회계_38

1.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에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정보(급여 등) 열람·공개를 요구할 때 열람 등을 허용해도 되는지39
2. 입주자등이 관리사무소에 아파트 직원급여 내역의 열람·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응해도 되는지40
3. 입주자등이 관리사무소에 아파트 관리비 내역의 열람·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응해도 되는지45
4.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업무추진비 등) 내역의 열람·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응해도 되는지47

IV

아파트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게시판_50

온라인 홈페이지

- 1. 아파트 온라인 카페, 홈페이지 등을 친목 목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업무 목적으로 보아야 하는지51
- 2. (친목목적) 해당 사이트에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53
- 3. (업무목적) 해당 사이트에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55
- 4. (업무목적)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게시판실명제'를 의결하여 닉네임에 입주민의 이름과 동을 공개해도 되는지57
- 5. (친목목적) 해당 사이트에 게시(업로드)할 수 있는 정보의 예시59
- 6. (업무목적) 해당 사이트에 게시(업로드)할 수 있는 정보의 예시61
- 7.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홈페이지 제작 업체에 제작·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관련 사항의 공개의무63

오프라인 게시판

- 1. 관리주체가 게시판에 공지(부착)하는 위법한 정보의 예시65
- 2. 아파트 관리비 연체에 대한 독촉장을 입주민 문 앞에 공지(부착)해도 되는지67

V

동대표 선거_68

- 1.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자 후보자 정보를 수집·이용해도 되는지69
- 2.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에게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거주요건 준수여부' 정보를 제공해도 되는지73
- 3.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주민에게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거주요건 준수여부' 정보를 제공해도 되는지74
- 4. 입주자대표회의의 후보가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입주민의 개인정보 (전화번호 등)를 제공받아 선거홍보 문자를 전송해도 되는지75

CONTENTS

VI

관리규약 및 각종 문서·동의서·계약서의 공개·열람 등_78

1. 관리규약 개정안을 제안한 입주자 명단 사본(동, 호수, 성명, 서명날인)을 열람 또는 공개해도 되는지79
2. 입주민이 관리주체에게 장기수선계획 관련한 입주민 동의서 (찬반여부, 소유주 등 기재) 열람을 요구 시 허용해도 되는지83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종결 위임동의서(구분소유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서명, 전화번호)의 원본을 건설사(사업주체)에 제공해도 되는지85
4.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계약서의 공개)에 따른 계약서를 입주민에게 공개해도 되는지87

VII

주체별 개인정보의 처리_90

방문객

1. 외부인이 아파트 방문 시 경비실(관리주체)에서 방문객의 개인정보 (일반 개인정보)를 요구해도 되는지91
2. 외부인이 아파트 방문 시 경비실(관리주체)에서 방문객의 신분증을 요구해도 되는지93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동별 대표자정보

1.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에게 동별 대표자, 입대의 임원의 정보를 제공해도 되는지95
2. 관리사무소에서 동별 대표자, 입대의 임원 등의 비상연락망을 만들어 입주자에게 공개해도 되는지97

입주자정보

1. 입주자명부 작성에 대해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98
2. 입주자명부에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기재해도 되는지99
3. 임대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불법전대 확인을 위하여 입주자명부를 열람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101
4. 하자보수금 등 청구소송 위임을 위해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의 동의 없이 입주자명부를 법무법인에 제공해도 되는지 103
5.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리사무소에 입주민 정보를 요구할 때 제공해도 되는지 104
6.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를 실시할 때 아파트 관리소장이 보유한 입주민의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한지 106
7. 주민공동시설(도서관, 체력단련실 등) 이용 시 입주자정보를 수집해도 되는지 108

관리사무소 직원정보

- 1.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 직원의 정보(인사기록) 열람 가능여부 및 열람 범위 109
- 2. 입대의 회장이 비공식적(개인적)으로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청소원의 정보(이름, 연락처, 입사일) 열람 가능여부 110

VIII

영상정보처리기기(CCTV)_112

- 1. 공동주택 복도에 입주민이 CCTV를 설치해도 되는지 113
- 2. 공동주택 승강기 내부 CCTV 영상을 입주민이 열람해도 되는지 114
- 3.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설치한 CCTV를 모니터링해도 되는지 115

IX

기타_116

- 1.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을 위해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입주자, 소유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를 요청해도 되는지 117
- 2. 하자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관리사무소 등에 개인정보를 요청해도 되는지 118
- 3.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외부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입주민(소유자)으로부터 재건축추진위 설립 동의서(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받아도 되는지 120
- 4. 관리사무소에서 임대인(소유자)에게 임차인(세입자)의 아파트 관리비 연체내용을 알려줘도 되는지 122
- 5. 관리사무소에서 어린이집 임대료 금액의 월별 증빙자료 요청시 제공해도 되는지 123
- 6. 피신고업체가 비공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정보를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제공해도 되는지 124
- 7.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업무목적으로 개설한 단체 채팅방에 입주민의 동, 호수, 전화번호 등 정보가 채팅내용에 포함되어도 되는지 125

제3장

관리규약 제·개정 시 권고사항 · 127

부 록 · 131

- 개인정보 보호법 132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74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219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제1장

공동주택 개인정보 관련 주요 이슈

■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의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의미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모두 공동주택 관리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

참고 판례

피고인(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다량의 영상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저장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 왔거나,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한 사람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서울동부지법 2016노1510 판결)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관계

-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은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주체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업무의 부당 간섭을 배제하도록 강제하는 의무를 규정
- 따라서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포함)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각각의 개인정보처리자로 보는 것이 바람직
 - ※ 관리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속으로 볼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에 혼선 발생(목적외 이용 등의 사유만 검토되거나, 위수탁에 따른 관리감독을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야하는 사유 발생)

■ 관리규약의 법적 성격 및 효력의 정도

-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이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은 법규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음
 - ※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업무매뉴얼도,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관리규약은 효력이 없다고 안내

참고 판례

관리규약을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법령에 따라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으로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9호),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에 해당한다고 해석(헌법재판소 2016. 11. 1. 선고 2016헌마900; 헌재 2011. 4. 12. 2011헌마170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달리 정한 경우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음(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이러한 개인정보를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를 의미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회의에 참석한 입주민의 인적 사항을 포함한 각각의 발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회의록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

참고 : 법제처 유권해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 내용 중 발언자의 인적 사항을 포함한 각각의 발언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법제처, 안건번호18-0261, 회신일자2018-10-25)

■ 회의록 작성을 위해 생성된 녹화물·녹음물의 열람 가능 여부

- 회의록 작성 및 입주자등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CCTV 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해 녹화·녹음한 자료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의 일부가 되어, 당연히 열람 가능한 자료로 볼 수 있는지?
- 녹화·녹음물의 경우 회의록에 당연히 포함된 자료가 아닌 별개의 자료로, 관리규약에서 명시적으로 해당 영상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대상에서 배제
- 나아가 관리규약에서 영상 등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근거해 사생활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가능하면 마스킹 등 익명·가명처리

참고 판례

“회의록과 회의를 촬영한 영상은 그 안에 담긴 정보의 양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위 관리규약에 기해 당연히 ‘회의 영상’이 열람·복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회의 영상’에 관한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관리규약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규약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동부지법 2016노1510 판결)

■ 입주민의 회의록 열람 시, 발언내용에 대한 발언자 성명 공개 가능여부

- 입주민등의 요청으로 회의록 열람 시 발언자의 성명을 공개할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침해 등 자유와 권리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향후 공정한 업무진행을 위한 회의 참석자의 투명한 발언권을 저해할 가능성 농후
- 열람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근거해 사생활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가능하면 익명·가명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 주차관련 개인정보 수집 가능 범위

-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개인정보처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등 법령상 의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입주인 확인 및 차량 소유자 확인, 주차 관리 또는 입주자 명부 작성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수집·이용(보관 포함)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므로 관리사무소는 주차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으로 입주인 여부, 보유차량 정보 등을 확인해 주차카드를 발급한 뒤에는 이런 서류 사본을 보관하지 않고 진위 확인 후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에 적법한 근거 없이 보관하고 있던 해당 자료는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근거해 파기하여야 함

참고 사례 : 국토교통부 안내사항

차량관리를 위한 본인확인용으로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법인차량의 경우 재직증명서 등을 수집·저장하지 말고, 진위 확인 후 즉시 반환토록 안내 중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차량 등록현황 제공 가능 여부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목적 내 제공) 및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따라 적법요건을 갖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주인의 차량등록현황 제공 가능
-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근거해 사생활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 하고, 가능하면 익명·가명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해 차량등록현황은 통계처리하여 제공하여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통계처리

■ 관리주체가 직원정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근거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정한 바에 따른 행위를 의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됨을 규정(「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 또한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는 바, 급여 등을 통계적으로 변환한 경우가 아니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

■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에 아파트 관리비 내역 열람·공개 요구 시 열람·공개 행위의 적법성

-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는 입주자 등의 정보 열람을 규정하면서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②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제2항 단서에서도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
- 따라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근거해 사생활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가능하면 익명·가명처리

■ 아파트 홈페이지(온라인)의 성격 및 개인정보 처리 범위

- 홈페이지(또는 블로그 등)의 개설 주체에 따라, 친목 또는 공적 의무 준수 등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정도가 달라짐
- 관리주체의 경우 관리비 등의 사용내역 공개 등의 목적으로 홈페이지 운영이 가능하나, 입주민등은 친목 목적으로 블로그 등을 운영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에 따라 이 법 제15조, 제30조, 제31조가 적용 배제됨
-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체별로 그 허용 정도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근거해 사생활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가능하면 익명·가명처리

■ 친목 목적으로 입주민등이 개설한 온라인 카페 가입 시 정보주체 동의 필요 여부 및 수집·이용 범위

- 입주민 등이 개인정보 파일의 운영 없이 누구나 정보에 접근 가능한 홈페이지 등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홈페이지 등의 이용에 회원가입을 요구하거나 입주민 인증 등을 위해 동·호수 등의 정보를 필수정보로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친목 목적의 단체에 해당
- 홈페이지 등이 단순히 친목 목적으로만 운영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적용의 일부제외) 제3항이 적용되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수집·이용)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12조제6항)
- 다만, 이 경우에도 제3자 제공은 금지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입주자명부 작성 시 입주민 동의획득 필요성

- 아파트 관리사무소(개인정보처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63조, 제64조 등 관리규약이 정한 바와 법령상 의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입주민 확인 및 차량 소유자 확인, 주차 관리 또는 입주자 명부 작성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는 수집·이용(보관 포함)할 수 있음
- 따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입주자명부 작성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도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처리 범위 내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관리사무소에 있으므로 가능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거나 적법한 근거 따른 최소한의 정보가 수집·이용될 수 있도록 주의

■ 입주자명부 작성을 위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

- ‘아파트 관리사무소(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입주자명부 작성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가능
- 입주자 성명, 전화번호 등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밖에 직장명, 직장 연락처, 가족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혼인여부 등)은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 과다수집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 필요

■ 입주민 차량에 부착하는 차량식별카드의 개인정보 기재 허용 범위

- ‘차량식별카드’에 동호수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 정보는 차량에 부착된 다른 정보(예: 차량번호 및 연락처 등)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에 해당
- 관리주체가 업무의 효율을 위해 ‘차량식별카드’ 발급 시에 아파트명, 동, 호수, 성명,

연락처, 차량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강요하거나, 해당 정보를 주차관리를 위해 필요한 필수정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수집하고, 해당정보(예: 동호수, 연락처 등)가 기재된 차량식별카드(차량 부착용 스티커 포함)를 차량에 부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

참고사항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또는 관리사무소장 등)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및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제8호 및 제17호에 근거해, 아파트 단지 내 입주자 등 차량의 원활한 출입과 외부 차량의 출입·관리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하여 아파트 정문 및 후문(부) 출입구에 자동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차단기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주차장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입주민이 이를 따르도록 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관리규약(주차장관리규정 포함)은 「공동주택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예: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음(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참조)

■ '관리주체(경비실)의 방문객 신분증 요구 행위'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제한하고, 주거공간의 보안을 유지하며 시설물 훼손방지와 공용자산 보호 등을 목적으로 출입자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방문자의 성명, 기본적인 연락처, 방문목적, 출입 장소, 출입기간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기록·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 경우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외부인의 출입 가능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

- 다만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서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률,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가 아닌 한 동법 위반소지가 있음

※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출입관리 목적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되나, 단순히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되돌려 주는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로 보지 않으므로 확인 후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제2장

공동주택 개인정보 상담사례

- I.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 II. 주차관리
- III. 관리비 및 회계
- IV. 아파트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게시판
- V. 동대표 선거
- VI. 관리규약 및 각종 문서·동의서·계약서의 공개·열람 등
- VII. 주체별 개인정보 처리
- VIII. 기타

제2장
공동주택 개인정보 상담사례

I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Q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문서)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A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 내용 중 발언자의 인적 사항을 포함한 각각의 발언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답변검토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이러한 개인정보를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법제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 중 발언자의 인적 사항이 반영된 각각의 발언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민원 질의와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작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에 회의에 참석한 동별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포함한 각각의 발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회의록을 통해 특정인이 특정 내용을 발언한 것을 파악함으로써 해당 동별 대표자 개인을 특정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해당 동별 대표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 내용 중 발언자의 인적 사항을 포함한 각각의 발언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법제처, 안건번호18-0261, 회신일자2018-10-25).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Q2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녹화물, 녹음물)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A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의 녹화물, 녹음물은 발언자의 발언 내용 뿐 아니라 회의에 참석한 특정인의 음성 또는 초상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답변검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이러한 개인정보를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 중 발언자의 인적 사항이 반영된 각각의 발언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법제처, 안건번호18-0261, 화신일자2018-10-25).

한편,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정보는 촬영일시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저장되므로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한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이 있습니다.(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13-100호). 따라서 회의록 작성과 관련해 녹음 또는 녹화된 녹음물(음성) 및 녹화물(영상)의 경우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그 자체로 식별이 어려운 경우라 할지라도 최소한 정보주체의 성명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녹음·녹화물 파일에 포함되어 있거나, 대화의 방식이나 내용을 통해 개인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등 인격주체성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상정보의 경우,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경우라도 음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2. ~ 7. (생략)

Q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게 회의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지

* 해당 회의록에 입주자의 개인정보(동, 호수 등)가 포함되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A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를 소집·개최하여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는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 업무'라 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 열람행위는 적법합니다.

답변검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동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의미합니다.

즉, 입주자대표회의란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회의체 성격의 기구를 말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비 예산·운영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8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관한 증빙자료를 남겨 두도록 하는 취지에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때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에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14조에서는 관리주체에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를 소집·개최하여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는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 업무**’라 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록 열람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⑦ 생략

⑧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Q4 **입주민의 회의록 열람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A 입주민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8항에 근거해 회의록에 대한 열람권 행사 가능. 다만, 관리주체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답변검토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8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관한 증빙자료를 남겨 두도록 하는 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4호에 근거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입주민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8항에 근거해 회의록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각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 중 발언자의 인적 사항이 반영된 각각의 발언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법제처 유권해석)

따라서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의 회의록 열람 시 회의록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등에 따라 조치하는 한편,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을 열람토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8항에서 입주민 등의 회의록 열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주체가 입주민들에게 열람하게 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의록에 기재된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적법근거가 없는 한(열람을 규정한 특별한 규정 등) 입주민등의 열람은 금지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⑦ 생략

⑧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Q5 입주민의 회의록 열람 시, 발언내용에 대한 발언자 성명 공개 가능 여부 등

A 발언내용에 대한 발언자 성명 공개 등은 각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범위가 결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람조치 하여야 합니다.

답변검토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서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들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민 회의록 열람 시 발언자 성명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 녹음물, 녹화물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 등(열람범위)에 대하여는 각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으로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9호),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11. 1. 선고 2016헌마900; 헌재 2011. 4. 12. 2011헌마170 참조). 따라서,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이기에, 「공동주택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달리 정한 경우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참조).

따라서, 회의의 실시간 중계나 녹화물의 경우 개인의 초상 등이 담긴 영상이 처리된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위험성이 크기에, 회의구성원 간에 합의를 통해 사생활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회의록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발언자의 인적 사항이 반영된 각각의 발언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법이 정한 바에 따른 적법 근거가 없이 제3자에게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적법근거를 확인하고, 해당 회의록에 기재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을 열람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참고 : 서울시 관리규약준칙 제35조

- 관리주체는 회의결과를 게시판, 통합정보마당(서울시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단지 내에 구축된 경우)를 통하여 입주자들에게서 회의록을 통보받은 날 즉시 공개하도록 규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진행사항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하며, 실시간으로 입주자들에게 중계할 수 있다고 규정

-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하며 입주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후 공개하도록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⑦ 생략

⑧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Q6 법원의 아파트 CCTV 녹화영상 제출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 법원에서 사실조ixin청서를 통해 엘리베이터 내부 CCTV 녹화영상을 요청하는 경우

A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자 제공이 가능하나 이는 공공기관인 경우로 한정되고, 또한 의무 규정이 아니므로 아파트관리소가 법원에 반드시 CCTV 영상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검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이용·제공의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 받은 범위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용·제공이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제3자 제공이 금지됩니다.(제18조제2항)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예외사유(제18조제2항)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02.0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

따라서 관리사무소에서 법원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CCTV 녹화영상을 제출하는 것은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하나, 목적 외 제공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이 가능합니다.

본 사안은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른 법원의 사실조회요청으로, 동조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란 형식적으로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있거나 이용·제공하지 않을 경우 벌칙 등을 부여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해당 규정은 법원이 조사의 촉탁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인지 촉탁을 요청 받은 자(개인정보 처리자)의 자료 제공의무(개인정보 목적외 제공)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입주민의 생활할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법원에 반드시 CCTV 영상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8호에서는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자 제공이 가능하나, 이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되므로 아파트관리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의무 규정이 아니므로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보주체 또는 제3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3자 제공이 금지됨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02.0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제2장
공동주택 개인정보 상담사례

II

주차관리

Q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의 주차관련 자료를 보관해도 되는지

- 입주민 본인 차량의 경우 :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가족차량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 법인차량의 경우 : 재직증명서

A 주차관리를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이용은 가능하나 최소한의 목적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하여야 합니다.

답변검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제시한 요건에 따른 적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률(법령 등)에 적법한 근거가 없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집·이용하여야 한다면 정보주체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이 가능한 적법요건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따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근거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개인정보처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등 법령상 의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민 확인 및 차량 소유자 확인, 주차 관리 또는 입주자 명부 작성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수집·이용(보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므로 관리사무소는 주차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관리업무의 경우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등록 요청한 경우, 입주민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록할 차량에 관한 정보(차량번호 등), 주차관리 시 필요한 긴급연락처 정도만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적법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예: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법인 차량의 경우 재직증명서 등)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수집·이용을 할 수 없으며,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적법근거에 의해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수집 및 제공 등)를 요구·허용한 경우 외에는 수집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인지, 그리고 입주민의 차량이 맞는지 확인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요구하고 이를 확인한 뒤에는 관련 서류를 입주민에게 돌려주도록 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초과하는 개인정보가 수집·이용 및 보관 등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으로 입주민 여부, 보유차량 정보 등을 확인해 주차카드를 발급한 뒤에는 서류 사본을 보관하지 않고 진위 확인 후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에 적법한 근거 없이 보관하고 있던 해당 자료는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근거해 파기하여야 합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 처리원칙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로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법 제3조제1항, 제6항내지제7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Q2 입주민 차량에 부착하는 차량식별카드에 동, 호수 등을 기재해도 되는지

A 입주민의 자발적인 차량식별카드 부착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관리주체가 동·호수·연락처 등이 기재된 차량식별카드 부착을 강요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검토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또는 관리사무소장 등)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및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제8호 및 제17호에 근거해, 아파트 단지 내 입주자 등 차량의 원활한 출입과 외부 차량의 출입·관리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하여 아파트 정문 및 후문(부) 출입구에 자동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차단기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주차장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입주민이 이를 따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관리규약(주차장관리규정 포함)은 「공동주택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예: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참조).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이 정한 '주차장관리규정'에 근거해,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 등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출입카드(RF PASS CARD; 이하 '차량식별카드'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차량번호인식시스템(License Plate Recognition System: L.P.R System)에 차량을 등록하여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방문차량"의 경우(입주자의 차량 렌탈 포함) 방문자가 경비초소에서 제시하는 관리카드에 방문목적 등을 기재하고, "방문차량증"을 발급받아 차량 조수석 전면 유리에 부착시켜 방문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차량식별카드'에 '차량번호 및 연락처'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 정보는 다른 정보와의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법원도 '자동차번호판'은 차량 소유자의 식별이 가능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판결은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업무의 효율을 위해 '차량식별카드' 발급 시에 아파트명, 동, 호수, 성명, 연락처, 차량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강요하거나, 해당 정보를 주차관리를 위해 필요한 필수정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수집하고, 해당정보(예: 동호수, 연락처 등)가 기재된 차량식별카드(차량 부착용 스티커 포함)를 차량에 부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관리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에 근거해 입주민의 등록된 차량 식별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16조에 근거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이용하여야 하며, 입주민에게 차량에 차량식별카드 부착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입주민(차량 보유자)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외부인의 방문차량이나 차량 렌탈 등의 사유로 인해, 입주민 스스로가 아파트 단지 내의 자동출입과 타 차량의 원활한 운행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입주자 동호수 또는 긴급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등은 정보주체인 입주민(방문자 포함)의 자발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리주체(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와 무관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Q3 전 주민의 차량등록현황을 관리사무소가 입주자대표회의(동대표 등)에게 제공해도 되는지

A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한 근거에 따라 의결 진행을 위해 차량등록현황을 관리사무소측에 요구할 경우, 통계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답변검토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또는 관리사무소장 등)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및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제8호 및 제17호에 근거해, 아파트 단지 내 입주자 등 차량의 원활한 출입과 외부 차량의 출입·관리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하여 아파트 정문 및 후문(부) 출입구에 자동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차단기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주차장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입주민이 이를 따르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목적 내 제공(「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또는 수집이용 목적 외의 이용이자 제3자 제공(「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적법한 사유가 아니면, 정보주체인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서 제공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은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주체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업무의 부당 간섭을 배제하도록 강제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포함)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각각의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목적 내 제공) 및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따라 적법요건을 갖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주민의 차량등록현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목적 내 제공인 경우

관리주체가 동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사무소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에 근거하여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신설로 관리주체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판단기준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미리 공개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만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목적 외 제공인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은 정보주체의 동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이하생략)의 경우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대표에게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 적법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동대표의 이야기만 듣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한 사례 존재(헌재 2018. 8. 30. 2014헌마368)

따라서, 관리사무소는 목적외 이용·제3자 제공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 절차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문서로서 동대표에게 그 제공 목적을 요청하기 바라며, 그 문서를 적법증거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목적외 이용·제3자 제공 시 관리사무소장은 다음의 사항을 점검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 ▶ 목적의 정당성: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필요한지 검토
- ▶ 수단의 적정성: 해당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 ▶ 피해의 최소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인지 검토
- ▶ 법익의 균형성: 목적외 이용 또는 제공에 따른 이익과 정보주체 또는 제3자가 받을 수 있는 예상피해를 비교하여 전자가 우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검토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때, 관리주체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을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법 제3조제1항, 제6항 내지 제7항)

Q4 아파트 내 상가상인이 주차장 이용을 위해 자동차등록증, 임대차계약을 제출할 때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A** 상가상인과 주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정보주체 동의 없이 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답변검토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150세대 이상의 주택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상가부분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른 상가부분의 관리규약이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에 따라 수집·이용 시 정보주체의 동의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단순히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상인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규약(‘주차장관리규정’ 포함)에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상가상인의 주차장 이용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제시한 요건에 따른 적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률(법령 등)에 적법한 근거가 없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집·이용하여야 한다면 정보주체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이 가능한 적법요건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위에 기술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적법 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상가상인과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상가상인과 주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0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에서는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 '계약체결'에는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도 포함됨.(예: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계약체결 전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권리관계 등을 미리 조사·확인하는 경우)
- ▶ '계약이행'은 물건의 배송·전달이나 서비스의 이행과 같은 주된 의무의 이행뿐만 아니라 부수적 의무 즉 경품배달, 포인트(마일리지)관리, 애프터서비스 등의 이행도 포함됨.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상가상인의 주차장 이용을 위해서는 **상가상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등록하고 자 하는 차량의 정보**만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적법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이라 할 것입니다.

자동차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보증금, 계약금, 주소, 대리인 등 과도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자인지, 그리고 입주자의 차량이 맞는지 확인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요구하고 이를 확인한 뒤에는 관련 서류를 입주자에게 돌려주도록 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초과하는 개인정보가 수집·이용 및 보관 등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으로 입주인 여부, 보유차량 정보 등을 확인해 주차카드를 발급한 뒤에는 이런 서류 사본을 보관하지 말고 진위 확인 후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에 적법한 근거 없이 보관하고 있던 해당 자료는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근거해 파기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에 근거해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외의 경우는 가능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수집·이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수집·이용을 할 수 없으며,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적법근거에 의해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수집 및 제공 등)를 요구·허용한 경우 외에는 수집이 금지됩니다.

만약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바가 있어, 차량등록증을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할지라도 헌법재판소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으로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9호),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할 때,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이라도,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개인정보보호법령 등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법에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음을 고려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장
공동주택 개인정보 상담사례

III

관리비 및 회계

Q1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에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정보(급여 등) 열람·공개를 요구할 때 열람 등을 허용해도 되는지

A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각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 정보를 제공(제3자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답변검토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자치 의결기구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와는 구별됩니다.

즉,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업무, 역할이 명백히 다르며, 이는 개인정보취급업무 위수탁관계로 볼 수 없으며, 각각의 개인정보처리자로 보아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은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주체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업무의 부담 간섭을 배제하도록 강제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할 때,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포함)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각각의 개인정보처리자로 보아야 함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시행령 제14조제2항)

- ▶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 ▶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 ▶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 ▶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 ▶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 ▶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 ▶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 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
- ▶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아파트 관리사무소 특성상 직원이 소수인 관리사무소의 경우 직원의 급여명세서 등에 기재된 성명 등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2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보주체(해당 직원)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열람 또는 복사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2항제3호 및 제65조에 근거해,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의 관리사무소 사무의 지휘·총괄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되며,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근거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정한 바에 따른 행위를 의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됨을 규정하고 있으며(「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따라서 **이에 근거할 때,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직원 급여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법」은 제14조 내지 제17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9호에 근거해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에 한해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부여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는 관리사무소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법률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범위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임면(해임과 임명)에 한하므로, 직원 급여 정보 등은 제공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Q2 입주자등이 관리사무소에 아파트 직원급여 내역의 열람·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응해도 되는지

- 재직 중인 직원의 급여정보, 퇴사자의 급여정보 등

A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열람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검토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의미하며, 이에 근거할 때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관련 정보는 직원의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입주자 등은 직원인 정보주체와의 관계에서 제3자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적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입주자등에게 제공될 수 있으나 적법한 처리 사유가 아니면 정보주체인 직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등) 제2항에서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관리주체가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는 항목에 ‘**관리비등의 부과명세**(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이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명세를 말한다)’가 포함되어, 이를 공개 또는 열람토록 하고 있으며, 이 부과명세(동법 시행령 별표2)에 일반관리비중 인건비 항목으로 “**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는 입주자 등의 정보 열람을 규정하면서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②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제2항 단서**에서도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열람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열람·공개가능한 직원 급여정보의 범위는 위의 조항 및 시행령 제28조제2항제2호(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이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명세**를 말한다)를 고려하였을 때 ‘직원의 급여 총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 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제8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관리비
2.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3.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들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2와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방·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2.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③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7.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④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0.>

⑤ 관리주체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누수(漏水)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들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⑥ 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입주자들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명세(제1항제7호·제8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접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26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말한다.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들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2. 관리비등의 부과명세(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이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명세를 말한다) 및 연체 내용
3.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 입주자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6. 관리주체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제23조제1항 관련)

| 관리비 항목 | 구 성 명 세 |
|---------------------|--|
| 1. 일반관리비 | 가. 인건비: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나. 제사무비: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다. 제세공과금: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라. 피복비 마. 교육훈련비 바. 차량유지비: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사. 그 밖의 부대비용: 관리용품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에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
| 2. 청소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청소원인건비, 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
| 3. 경비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경비원인건비, 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 |
| 4. 소독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
| 5. 승강기유지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제부대비, 자재비 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
|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인건비, 자재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
| 7. 난방비 |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 난방비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
| 8. 급탕비 |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
| 9. 수선유지비 |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나.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다.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라.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 |
| 10. 위탁관리수수료 |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 비용 |

Q3 입주자등이 관리사무소에 아파트 관리비 내역의 열람·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응해도 되는지

- 아파트 전 세대에 대한 관리비 부과자료(세대주, 동호수, 전기료, 수도료 등 세부 금액) 및 관리비 입금내역 등

A 세대주, 동호수, 전기료, 수도료 등 세부 금액(관리비 입금내역)이 포함된 아파트 전 세대에 대한 관리비 부과자료(raw data)의 열람·공개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검토

입주자등이 열람을 요구하는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특별히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입주자등에게 관리비 부과자료 등의 열람·공개가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등) 제1항은 관리주체에게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동법 제2항에 따라 입주자 등이 해당 보관 자료(예: 모든 거래행위에 관한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참고]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보관서류를 명시적으로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자료의 보존기간은 공동주택 관리법령 및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서 최소 5년 이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이 경우 제1호 부터 제4호 및 제11호 부터 제16호는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1. 이 규약 및 제 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인계받은 설계도서 및 시설장비의 명세
5.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지원금을 수령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의록(녹음, 녹화물을 포함한다)
6.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7. 세대별 관리비에치금의 내역
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자료(계약서, 도면, 내역서, 설계변경, 입찰 참여 업체의 제출서류일체, 적격심사제 운영 관련 서류(회의록, 적격심사평가표), 재계약관련 서류(사업수행실적평가표, 입주자등의 의견청취서))
9. 입주자등의 민원처리기록부(전화, 방문, 서면 민원 포함한다)
10.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사용명세
11. 공사도면 및 준공도면
12.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13. 교체 및 보수 등에 따른 사진정보
14. 감리보고서
15. 시설물의 교체 및 유지보수 등의 이력(시설공사 전·후의 도면 및 공사 사진을 포함한다)
16. 사업주체의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보수 이력
17.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다만, **동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는 입주자 등의 정보 열람을 규정하면서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②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제2항 단서**에서도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주, 동호수, 전기료, 수도료 등 세부 금액(관리비 입금내역)이 포함된 아파트 전 세대에 대한 관리비 부과자료(raw data)의 열람·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제·개정 시 위의 사안을 고려하여 개인의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내역의 열람·공개 범위에 대하여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규정된 바를 확인하시기바라며,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4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업무추진비 등) 내역의 열람·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응해도 되는지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

A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입대의 운영비 열람·공개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개의 방법, 범위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검토

입주자등이 열람을 요구하는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특별히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입주자등에게 관리비 부과자료 등의 열람, 공개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등) 제1항은 관리주체에게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동법 제2항에 따라 입주자 등이 해당 보관 자료(예: 모든 거래행위에 관한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는 입주자 등의 정보 열람을 규정하면서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②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제2항 단서**에서도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제4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등의 내역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입주자 등이 요구한 입대의 운영경비는 관리주체가 공개하여야 하는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제8호)

따라서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요구가 없더라도 동조에 따라 관리비, 사용료 등의 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며, 참고로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료 등의 내역은 **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을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안의 내용)

공개 방법,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규정된 바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제64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자료의 보존기간은 공동주택 관리법령 및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서 최소 5년 이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이 경우 제1호 부터 제4호 및 제11호 부터 제16호는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1. 이 규약 및 제 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인계받은 설계도서 및 시설장비의 명세
5.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지원금을 수령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의록(녹음, 녹화물을 포함한다)
6.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7.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자료(계약서, 도면, 내역서, 설계변경, 입찰 참여 업체의 제출서류일체, 적격심사제 운영 관련 서류(회의록, 적격심사평가표), 재계약 관련 서류(사업수행실적평가표, 입주자등의 의견청취서))
9. 입주자등의 민원처리기록부(전화, 방문, 서면 민원 포함한다)
- 10.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사용명세**
11. 공사도면 및 준공도면
12.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13. 교체 및 보수 등에 따른 사진정보
14. 감리보고서
15. 시설물의 교체 및 유지보수 등의 이력(시설공사 전·후의 도면 및 공사 사진을 포함한다)
16. 사업주체의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보수 이력
17.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제8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관리비
2.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3.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 ③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7.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제2장
공동주택 개인정보 상담사례

IV

아파트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게시판

온라인 홈페이지

Q1 아파트 온라인 카페, 홈페이지 등을 친목 목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업무 목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A 입주민등이 친목 목적으로 개설한 경우 친목 목적의 홈페이지 개설에 해당하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개설한 경우 업무목적에 해당합니다.

답변검토

아파트 홈페이지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개설하였는지, 홈페이지 이용 시 불특정다수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지, 회원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여부 및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입주민 개인’이 입주민들과의 친목을 목적으로 온라인 카페, 홈페이지 등(이하 홈페이지 등)을 개설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친목 목적의 홈페이지 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의 수범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 이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사업자 및 개인 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업무’는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수 유무나 영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단 1회의 행위라도 계속 반복의 의사가 있다면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인들에게 모임을 안내하기 위해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행위나 결혼을 알리기 위해 청첩장을 돌리는 행위 등은 업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 성명, ID 등으로 검색·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나 체계적인 검색·열람을 위한 색인이 되어 있는 수기(手記) 문서 자료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입주민 등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담긴 정보에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다녀간 이용자의 정보가 어떤 형식으로도 저장되지 않고,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고 있지 않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가입을 받고, 성명과 이메일 주소 등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목록화되고 입주민 등의 정보가 특정화되어,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구성한다면(예:회원가입 등의 방법으로 ID와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거나 기타 개인정보를 수집해 목록화 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에 따라 입주민 등이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친목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12조제6항)

1. 친목단체의 가입을 위한 성명, 연락처 및 친목단체의 회칙으로 정한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와 관련된 인적 사항
2. 친목단체의 회비 등 친목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납부현황에 관한 사항
3. 친목단체의 활동에 대한 구성원의 참석여부 및 활동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친목단체의 구성원 상호 간의 친교와 화합을 위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생일, 취향 및 가족의 애경사 등에 관한 사항

다만, 이 경우에도 제3자 제공은 금지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입주민 등에게 의무적(필수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 등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되신다면, 상기 조항에 근거하여 카페 운영자에게 카페 회원가입 시 그 개인정보가 필요한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무목적으로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개설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업무 목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Q2 (친목목적) 해당 사이트에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A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 운영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적용이 제외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지 않아도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검토

입주민 등이 개인정보 파일의 운영 없이 누구나 정보에 접근 가능한 홈페이지 등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 등의 이용에 회원가입을 요구하거나 입주민 인증 등을 위해 동·호수 등의 정보를 필수정보로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친목 목적의 단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등이 단순히 친목 목적으로만 운영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제3항이 적용되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수집·이용), 제30조(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및 제31조(개인정보책임자의 지정)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친목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12조제6항)

1. 친목단체의 가입을 위한 성명, 연락처 및 친목단체의 회칙으로 정한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와 관련된 인적 사항
2. 친목단체의 회비 등 친목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납부현황에 관한 사항
3. 친목단체의 활동에 대한 구성원의 참석여부 및 활동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친목단체의 구성원 상호 간의 친교와 화합을 위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생일, 취향 및 가족의 애경사 등에 관한 사항

따라서 홈페이지 등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3자 제공은 금지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편,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홈페이지 등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되신다면, 상기 조항에 근거하여 카페 운영자에게 카페 회원가입 시 그 개인정보가 필요한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Q3 (업무목적) 해당 사이트에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A 관리주체 등이 업무목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함에 있어,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획득이 필요합니다.

답변검토

아파트 홈페이지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개설하였는지, 홈페이지 이용 시 불특정다수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지, 회원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여부 및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이 법이 정한 사항 등을 공개할 업무 목적으로 영리목적 없이 홈페이지(예: 아파트 전문 종합포털에 개설된 단지별 홈페이지, 종합포털에 개설된 블로그 등)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므로, 온라인 홈페이지 관리·운영 시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 사안에서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업무목적의 홈페이지 등 가입을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획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공개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보의 입력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운영·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에 이나 시도에서 관리하는 ‘통합정보마당’에 로그인하기 위해 가입절차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나 시·도 등이 개인정보처리자가 됩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주체 등에게 관리비 등의 내역 공개(법 제23조제4항), 회계감사 결과 공개(법 제26조제3항),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서 공개(법 제28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조사·검사·감사 결과 통보 내용 공개(법 제93조제8항), 공사중지·원상복구·하자보수·이행 등의 필요한 조치 통보 내용 공개(법 제94조)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주체의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등이 운영하는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제4항).

더불어 관리주체 등이 관리비 등의 내역과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 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도지사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예: 서울시의 ‘공동주택 통합정보 마당’; <https://openapt.seoul.go.kr/portal/index.do>)를 통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제공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Q4 (업무목적)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게시판실명제'를 의결하여 닉네임에 입주민의 이름과 동을 공개해도 되는지

A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가 업무 목적으로 개설한 홈페이지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이 별도로 정한 바가 아니면, 입주민 등의 동의에 의한 자발적인 공개를 제외하고, 입주민의 이름과 동, 호수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답변검토

관리주체는 홈페이지의 이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해킹 등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개인정보의 노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사항 안내를 실시하는 등의 관리를 통해 해당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는 입주민 등의 부주의 또는 자발적인 게시글로 게시자 및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참고로 게시판에 게재된 입주민의 이름과 동호수, 닉네임 등도 입주민의 다른 정보와 연결되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실명게시판을 운영할 경우, 입주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은 논외로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때,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법 제3조제1항, 제6항내지제7항)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제48조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 방법을 위해 입주자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제48조에 규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절차 규정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아파트단지의 관리규약으로 홈페이지의 운영과 관련해 '게시판실명제'를 운용하도록 규정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해당하지만(영 제14조제2항제2호), 이 경우에도 해당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 없습니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참조).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가 이뤄져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미래창조과학부 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지정하는 정보보호 전문업체의 보안진단 또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았거나, 암호모듈검증(KCMVP)을 받은 보안시스템을 적용한 전자투표로 그 의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보통, 직접, 비밀, 평등 투표가 보장되어야 하며 현장투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
3. 법 제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5. 법 제8조에 따라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를 결정하는 경우
6.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입주자에 한함)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한 경우



Q5 (친목목적) 해당 사이트에 게시(업로드)할 수 있는 정보의 예시

- [주의 필요] 관리사무소 직원조직도 및 직원의 명함사진
- [주의 필요] 불법주차 차량의 정보(동, 호수, 차량번호)
- [주의 필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의해 전세대원에게 공지되었던 동대표 후보자 약력

A 입주민 등이 친목 목적으로 개설한 사이트의 경우, 친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나, 직원의 명함사진이나 불법주차 차량정보 등은 친목 목적의 한계를 초과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해당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답변검토

입주민 등이 개인정보 파일의 운영 없이 누구나 정보에 접근 가능한 블로그 등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단지과 관련된 카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입주자 등 이용자에 회원가입을 요구하거나 입주민 인증 등을 위해 동·호수 등의 정보를 필수정보로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친목 목적의 단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친목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12조제6항

1. 친목단체의 가입을 위한 성명, 연락처 및 친목단체의 회칙으로 정한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와 관련된 인적 사항
2. 친목단체의 회비 등 친목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납부현황에 관한 사항
3. 친목단체의 활동에 대한 구성원의 참석여부 및 활동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친목단체의 구성원 상호 간의 친교와 화합을 위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생일, 취향 및 가족의 애경사 등에 관한 사항

다만, 이 경우에도 제3자 제공은 금지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이러한 개인정보를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때, 직원의 명함사진, 불법주차 차량의 정보(동, 호수, 차량번호), 동대표 후보자의 약력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사안별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적절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카페개설자인 입주인 등은 ‘친목단체의 가입을 위한 성명, 연락처 및 친목단체의 회칙으로 정한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와 관련된 인적 사항 등’의 수집·이용은 가능하나, 해당 친목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관리사무소 직원조직도에 직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게시하는 행위는 적법근거(정보주체인 직원의 동의 등)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입주인 등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관리주체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정보에 해당할 경우, 직원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공개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직원의 명함사진은 해당 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등, 판례집 17-1, 681,682).

둘째, 입주자 등이 운영하는 친목 목적의 카페 등에서 불법주차 차량의 정보(동, 호수, 차량번호)를 게시하는 행위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입주자등의 업무 권한 밖의 행위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면, 권한 없이 해당 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입주인 등이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법주차 차량의 정보(동, 호수, 차량번호)를 게시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하며, 급박한 사유가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해당 게시물을 파기하고, 해당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과 같이 일련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친목목적으로 입주인이 개설한 온라인 카페 등에 입주자 등이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의해 전세대원에게 공지되었던 동대표 후보자 약력을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권자인 입주자등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하나, 카페 개설자는 가능한 정보주체인 동대표 후보자의 동의를 받고 해당 게시물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입주자등인 회원이 해당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행위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카페 운영자는 게시판을 통해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사항 안내를 실시하는 등의 관리를 통해 해당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는 입주민 등의 부주의 또는 자발적인 게시글로 게시자 및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Q6 (업무목적) 해당 사이트에 게시(업로드)할 수 있는 정보의 예시

- [주의 필요] 관리사무소 직원조직도 및 직원의 명함사진
- [주의 필요] 불법주차 차량의 정보(동, 호수, 차량번호)

A 관리주체의 업무 목적 범위 내에서 직원조직도의 경우 성명, 업무 연락처와 같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 되는 범위 내에서 익명·가명처리하여 게시가 가능합니다.

답변검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불법주차 차량의 정보(동, 호수, 차량번호)의 경우, 아파트의 특성상 동·호수 및 차량번호 등을 통해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관리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적법한 공개 사유가 아니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단체사진을 올릴 경우, 해당 정보주체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동의한 정보주체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초상은 블라인드 처리 하는 등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의 직원조직도 및 직원의 명함사진을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경우, 직원조직도의 성명, 연락처 등은 입주자 등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직원의 동의 없이도 게시가 가능하나, 직원의 명함사진은 개인의 초상권과 관련이 있기에, 정보주체인 직원의 동의를 받아 게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리주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주차 차량의 정보(동, 호수, 차량번호)를 게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주차장관리규정’ 포함)에서 특별히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법 제3조제1항, 제6항내지제7항)

한편,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주체 등에게 관리비 등의 내역 공개(법 제23조제4항), 회계감사 결과 공개(법 제26조제3항),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서 공개(법 제28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조사·검사·감사 결과 통보 내용 공개(법 제93조제8항), 공사중지·원상복구·하자보수·이행 등의 필요한 조치 통보 내용 공개(법 제94조) 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주체의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토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등이 운영하는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

다만, 관리주체가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의해 전세대원에게 공지되었던 동대표 후보자 약력을 게시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관리주체의 공개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에서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며,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관리주체가 해당 홈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관리규약(‘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동대표 후보자 약력을 게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Q7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홈페이지 제작 업체에 제작·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관련 사항의 공개의무

A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만약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리비 고지서에 실는 등 입주민이 언제든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면 됩니다.(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답변검토

본 사안에서 아파트 홈페이지 제작업체에 홈페이지 제작·관리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이 수반된다면 이는 개인정보취급업무 위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정한 바에 따른 다음의 사항을 게시하며, 위탁에 관한 사항도 함께 공개하여야 합니다.

-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 ▶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 포함)
- ▶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 법 제15조제3항과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의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 가명처리 시 가명처리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한편,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위탁 목적 등을 문서화하여야 하며(제26조제1항),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제2항)할 수 있습니다.

- ① 위탁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 ② 위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실는 방법
- ③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실는 방법
- ④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따라서 위탁에 관한 사안을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리비 고지서 등에 실는 등 입주민이 언제든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면 됩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지 않고 그 밖의 방법으로도 위탁관련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게시판

Q1 관리주체가 게시판에 공지(부착)하는 위법한 정보의 예시

- 아파트 관리비를 연체한 세대 정보
- 불법주차 차량의 정보(동, 호수, 차량번호)
- 주차증빙자료 미제출 입주자의 정보(동, 호수, 차량번호)
- 민원을 제기한 신고자 이름
- 동호수별 하자소송 채권양도 위임서 제출여부

A 아파트 게시판을 통해, 아파트의 관리·운영 등의 주요 사실에 대한 입주민 등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이 규정한 바에 따른 사항은 공지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가능하면 익명·가명처리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한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답변검토

아파트 게시판을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아파트의 관리·운영 등의 주요 사실에 대한 입주민 등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를 때, 관리비 납부 등의 공지(23조), 회계감사의 주요사항 공지(26조), 감독기구의 감독 결과 통보 내용 공지(제93조), 공사의 중지 등에 관한 사항 공지(제94조) 등과 같이 입주민 등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아파트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및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따라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소장은 각각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또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의 업무 목적에 부합하도록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해당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을 통해 구체화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적법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는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아파트 관리 업무 목적의 범위 내에서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주민 등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 공지 등의 목적으로 아파트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리주체는 아파트 게시판이 입주민 등 이외에도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주지하고, 아파트 게시판에 안내사항 등을 공지할 때, 입주민 등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주체는 다음과 같이 입주인 등에게 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게시판을 통해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안내가 가능합니다.

- 제·개정된 관리규약에 관한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 아파트 관리비 항목별 산출내역·사용료 등(세대별 부과내역 제외)
- 회계감사 결과, 감독기구 통보 내용, 공사 중지 등에 관한 사항
-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의 현황
- 아파트 단지 내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 관리주체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기타 공지사항

다만, 이 경우에도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입주인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게시되는 내용은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로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1항, 제6항, 제7항)

한편, 관리주체는 다음과 같은 공지는 입주인 등의 알권리 보다는 게시된 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기에, 가능한 관리주체는 해당 정보주체가 동의하거나 글의 게시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아파트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을 공지 등의 목적으로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주체는 입주인 등의 부주의 또는 자발적인 게시글로 게시자 및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나 민감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공지
- 아파트 관리비 연체 세대의 정보(동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 아파트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포함)의 세대별 부과내역
- 민원을 제기한 신고인의 신상정보(이름, 연락처, 동호수 등)나
- 입주카드 작성용 증빙자료의 미제출로 인한 입주자의 정보(예: 동호수 등)
- 불법주차 차량의 정보(동, 호수, 차량번호 등) 등
- 입주인 등 또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 침해 등에 관한 사항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처리의 적법한 근거가 없다면 정보주체의 동의로도 그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이니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며, 업무의 편의를 위해 입주카드 작성용 증빙자료 미제출자의 게시판 공지나 불법주차 차량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는 입주인 등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관리주체는 가능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직접 연락해 해당 업무를 완료하거나 가능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1항, 제6항, 제7항)

Q2 아파트 관리비 연체에 대한 독촉장을 입주민 문 앞에 공지(부착)해도 되는지

A 관리비 징수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연체 사실을 입주민 문 앞에 공지하는 것은 연체에 대한 독촉장 정보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것으로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답변검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은 관리주체가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들에게 개별 통지하는 방식으로 다음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입주자들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 ② 관리비등의 부과명세(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이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명세를 말한다) 및 연체 내용
- ③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의 현황
- ④ 입주자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 ⑤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 ⑥ 관리주체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한편, 관리주체가 특별한 공지사항을 해당 입주민의 문 앞에 게시하는 행위는,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라도, 결과적으로는 해당 세대에 거주하는 자 뿐만 아니라 제3자(같은 층의 다른 세대 거주자, 배달원 등) 등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상태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입주민의 문 앞에 관리비 연체에 대한 독촉장 정보를 부착하는 것은 연체자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개별 유선연락 또는 해당 세대 우편함에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장기연체자의 체납 독촉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2장
공동주택 개인정보 상담사례



동대표 선거

Q1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자 후보자 정보*를 수집·이용해도 되는지

* 후보자 요건을 갖춘 입주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보 및 범죄경력 정보

A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해 해당 법이 요구하는 자격(예: 거주요건, 범죄 경력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적법 절차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합니다.

답변검토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가 정한 바에 따라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이나 해임 등을 위해 그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증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적법 근거 내(예: 후보자의 동의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서 그 대상자(예: 후보자, 해임대상자, 이하 '그 대상자'라 함)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위원장이 사퇴,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도 궐위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함)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의무적(필수적)으로 그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그 대상자의 사생활 침해는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1항, 제6항 내지 제7항, 제1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동별 대표자 후보자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서는 안됩니다.

〈자격요건〉

- ▶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
- ▶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결격사유〉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동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참고)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동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 동법 시행령 제9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에서는 동별 대표자 후보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사무 및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 방법 등〉

「공동주택관리법」 법 제1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에 대한 범죄경력의 확인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별 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이 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다음 각 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6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위원장이 사퇴, 해임 등으로 결위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도 결위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하여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제14조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②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4.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제17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①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에 대한 범죄경력의 확인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별 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가 법 제14조제4항제3호·제4호 또는 이 영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9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제95조에 따라 해당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사무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Q2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에게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거주요건 준수여부’ 정보를 제공해도 되는지

*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주민등록 전입일자 등

A 관리주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거주요건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답변검토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근거해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로 다음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이하 “공동주택의 운영·관리 등”이라 함)
- 공동주택의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 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
-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예: **입주자대표회의 및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 또는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한편,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때,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근거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동별 후보자의 전입일자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처리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제공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처리해야 합니다.’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한편, 관리사무소가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전입일자 등'의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이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제1항에 근거할 때, 다음의 경우 관리사무소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이 사퇴, 해임 등으로 꺾워된 경우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도 꺾워된 경우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그 대상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1항, 제6항, 제7항, 제16조)

Q3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주민에게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거주요건 준수여부' 정보를 제공해도 되는지

*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주민등록 전입일자 등

A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바에 따라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거주요건'을 확인할 수 있으나 입주민에게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답변검토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근거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근거해 관리사무소로부터 제공받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거주요건' 자료를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업무를 위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자료(예: 거주요건 확인자료)를 '입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제3차 제공에 해당하며,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모두 살펴봐도, 단순히 입주민에게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결격 사유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입주민에게 제공할 법적 근거나 의무, 권한 등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아파트관리규약준칙 등에 비추어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일지라도 동별 대표자 등 입주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자의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보주체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주민에게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거주요건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됩니다.

참고로, 입주자대표회장이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선거관리위원장을 대신해 제공 받은 아파트 관리비 미납내역을 정보주체인 동 대표자의 동의 없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대신하여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공고, 동대표 자격상실 공고' 목적으로 입주민 등에게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과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있습니다.

Q4 입주자대표회의 후보가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입주민의 개인정보(전화번호 등)를 제공받아 선거홍보 문자를 전송해도 되는지

A 입주자대표회의 후보자가 입주민인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관리사무소로부터 직접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선거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행위는 위법소지가 존재합니다.

답변검토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근거해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로 다음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이하 "공동주택의 운영·관리 등"이라 함)
- 공동주택의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

-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예: 입주자대표회의 및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 또는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따라서 관리사무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과 사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사무소가 입주자대표회의 후보에게 정보주체인 입주민 등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됩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등에 근거해 해당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만약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서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후보자·입주자등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나 '후보자·입주자등이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 해당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리규약에 위반되는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가 입주자대표회의 후보에게 정보주체인 입주민 등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행위가 아니므로, 관리사무소는 선거홍보 목적으로 후보자·입주자등에게 입주민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됩니다.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등에 근거해 선거관리 사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게 제공하더라도 그 대상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6항내지제7항)

제2장
공동주택 개인정보 상담사례

VI

관리규약 및 각종
문서·동의서·계약서의
공개·열람 등

Q1 관리규약 개정안을 제안한 입주자 명단 사본(동, 호수, 성명, 서명날인)을 열람 또는 공개해도 되는지

A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의 일부로 관리규약 개정안 제안자 명단 사본이 포함된 경우, 해당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열람 가능하나, 관리규약에서 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공개토록 의무화하는 규정은 위법소지가 존재합니다.

답변검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이러한 개인정보를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할 때, 관리규약 개정안을 제안한 입주자 명단 사본에는 해당 입주자의 성명, 동, 호수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공유 포함)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예,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또는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3호(예,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사무소(관리주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포함)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관리규약 개정안 제안 입주자 명단 사본’의 처리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관리규약의 개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개정하거나 ②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개정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제3조).

그리고 입주자대표 회장은 관리규약이 제정·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정·개정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호,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지 제5서식]). 이에 따라 관리규약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대상이며, 신고시 다음의 서류를 증빙용으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들의 동의서(관리규약 제정·개정 신고의 경우만 해당) 각 1부
- 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 1부

이는 관리규약이 사적자치에 근거한 규약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공정하고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해 규약이 제·개정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용도라 할 것입니다.

※ 신고된 규약과 세대별 배포한 관리규약이 상이할 경우, 신고수리된 관리규약만 효력 인정

따라서 관리규약 개정방식 중 전자인 ①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의 일부로 '관리규약 개정안을 제안한 입주자 명단 사본'이 포함되어, 입주자들의 열람 청구 대상이 된다면, 해당 정보주체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인 ②의 사유로 관리규약이 개정된 경우,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관리규약 개정안을 제안한 입주자 명단 사본'에 대해 입주민등의 열람 또는 공개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내용이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해당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면(「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8호) '관리규약 개정안을 제안한 입주자 명단 사본'은 입주민등의 열람 또는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여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에 관하여 일차적으로 규약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관한 규율을 당사자간의 사적 자치에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는 아파트 단지 자체에서 정한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파트 입주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서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심판대상을 근거로 하여 공동주택입주자들의 협의를 거쳐 채택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3. 8. 26. 선고 2003헌마534 결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위헌확인]

한편, 헌법재판소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으로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9호),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11. 1. 선고 2016헌마900; 헌재 2011. 4. 12. 2011헌마170 참조). 따라서,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이기에, 「공동주택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달리 정한 경우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참조).

따라서 관리사무소(관리주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포함)는 관리규약의 개정이라는 당초의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 내(예: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사실확인 등)에서 제3자인 입주민등의 요청으로 열람 또는 공개를 할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주체인 입주민등에게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열람 또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규약에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법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규정은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관리사무소는 수집·이용 목적(예: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제안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의 제3자 제공이라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입주자등에게 해당 정보를 열람 또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 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관리사무소는 관리규약의 개정과 다른 목적으로 관리규약 개정안을 제안한 입주자 명단의 사본(동, 호수, 성명, 서명날인)을 입주자등이 열람 또는 공개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적법사유(예: 정보주체 동의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등)가 있으면, 해당 개인정보가 포함된 관리규약의 개정안 제안 입주자 명단 사본을 입주자등이 열람하거나 공개요청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등의 열람 또는 공개에 관한 적법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공동주택 관계 법령, 규약 등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기관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므로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등에게 해당 정보를 적법한 처리 근거에 따라 열람 또는 공개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6항내지제7항)



Q2 입주민이 관리주체에게 장기수선계획 관련한 입주민 동의서(찬반여부, 소유주 등 기재) 열람을 요구 시 허용해도 되는지

A 회의록과 입주민 동의서는 운영의 적법 근거가 다르기에, 명시적인 적법 근거가 있거나, 해당 자료의 정보주체 각각의 동의가 없다면, 개인정보(예: 이름, 동, 호수 등)를 삭제 또는 가림처리 하는 등 제3자 열람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답변검토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한 입주민 동의서는 성명, 동호수, 찬반여부, 서명이 포함되며, 동의를 위해 입주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성명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성명, 동호수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의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공유 포함)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예,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또는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예,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주민이 관리주체/입대에게 장기수선계획 관련한 입주민 동의서(찬반여부, 소유주 등 기재)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업무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함)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 이와 관련해,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제79조제3항에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수시조정)할 경우 [별지 제12-2호서식]에 따라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8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 결정)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입주자에 한함)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한편, 법원은 회의록과 회의를 촬영한 영상은 그 안에 담긴 정보의 양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회의록의 열람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아니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해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정보주체들의 동의하에 촬영됐다 하더라도 그 영상을 제공, 공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16노1510 판결 참조) 따라서, 단순히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입주민의 동의서가 언급되었다 하여도, '회의 영상'에 관한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관리규약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입주민들에게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회의를 촬영한 영상들은 입주자가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선관위 회의록에 해당하지 않고, 관리규약에서 정한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영상정보 제공 행위를 관리규약에 따른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한바 있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16노1510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해,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제64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제1항제2호에서 '장기수선계획서'를 열람의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특별히 장기수선계획서의 동의서면에 대한 명시가 없고, 제17호에 규정된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열람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히 이 규정만으로는 입주민 동의서가 열람 가능한 자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을 통해, 열람 가능한 회의록의 범위에 장기수선계획 관련 입주민 동의서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열람이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동의서가 열람 가능한 회의록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관리규약을 확인하고,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법원은 입주자등이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5. 30. 선고 2007가합9645 판결 참조)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등에게 해당 정보를 적법한 처리 근거에 따라 열람 또는 공개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6항내지제7항)

Q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종결 위임동의서(구분소유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서명, 전화번호)의 원본을 건설사(사업주체)에 제공해도 되는지

A 하자보수종결 위임동의서는 하자보수종결에 대해 각 구분소유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한 사항이나, 이는 업무상 위임에 해당할 뿐이므로, 제3자인 건설사에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여야 합니다.

답변검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이러한 개인정보를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자보수종결 위임동의서에는 해당 구분소유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서명,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있는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공유 포함)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예,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또는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3호(예,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임동의서(구분소유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서명, 전화번호)의 원본을 건설사(사업주체) 요청에 의해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는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7조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등이 요구하는 경우의 하자보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하자 보수를 청구 받은 날(법 제4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자진단결과)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그리고 적법한 하자보수의 청구권자는 다음과 같이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으로 나뉘어 살피볼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 구분 | 하자 보수 청구권자 | 청구의 대행이 가능한 자 |
|------|---|---|
| 전유부분 |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 입주자는 전유부분에 대한 청구를 아래 '나. 관리주체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음 |
| 공용부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나.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함) 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 공용부분에 대한 청구를 좌측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

해당 사안의 경우 사업주체가 관리주체에게 하자보수청구권의 정당한 행사 권원을 살펴보기 위해 위임동의서(구분소유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서명, 전화번호)의 원본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전유부분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사업주체는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단서)과 사업주체는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즉시 그 보수결과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 통보하여야 하는 의무규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등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체와 입주자(전유부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공용부분) 하자보수가 끝난 때에는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담보책임 종료확인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는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른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자는 반드시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토록 의무화 하고 있음) 등이 아니면, 사업주체에게 위임동의서(구분소유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서명, 전화번호)의 원본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내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4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계약서의 공개)에 따른 계약서를 입주민에게 공개해도 되는지

* 계약서 내용 중 대리인으로 계약한 관리소장 이름, 전화번호, 주소, 계약상대자의 업체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공개 가능여부

A 계약서를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할 경우,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가능하다면 익명/가명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검토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근거해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근거해 살펴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민 등의 알권리 보장과 참여를 통해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 공개범위를 정하여야 하며, '공개범위'는 누구와 계약을 하였고, 어떤 내용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이름(회사명), 회사 대표번호, 회사 주소 등 '법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보호대상으로 하기에, 법인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계약서에 계약당사자 개인의 휴대전화번호, 개인의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경우 공개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정보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공개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게시판 등을 통한 계약서의 공개 시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민 등의 알권리 보장과 참여를 통해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 공개범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리사무소는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그 대상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6항내지제7항, 제16조)

계약서의 공개 범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참고하시고, 만약 관리 규약에서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소관부처인 국토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계약서의 공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7조 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제2항제1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제27조제2항제1호의 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조(위탁관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2장
공동주택 개인정보 상담사례

VII

주체별 개인정보의 처리

방문객

Q1 외부인이 아파트 방문 시 경비실(관리주체)에서 방문객의 개인정보(일반 개인 정보)를 요구해도 되는지

- 방문 동, 호수, 방문객의 연락처 등

A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나, 최대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답변검토

「개인정보 보호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시설물 관리규정* 및 출입업체관리규정* 포함) 등에 근거해 살펴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제한하고, 주거공간의 보안을 유지하며 시설물 훼손방지와 공용자산 보호 등을 목적으로 출입자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방문자의 성명, 기본적인 연락처, 방문목적, 출입장소, 출입기간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기록·보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외부인의 출입 가능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

한편, 아파트 경비원은 시설경비업무를 담당하며, 「경비업법」 제2조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7항에 근거해,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제62조제4항과제5항에 근거할 때,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할 때, 관리사무소가 경비원 등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의 일환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4항)를 갖게 되며, 이에 따라 외부 방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의 시설물 사용규정(안)*에서는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와 시설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입주자 등과 외부사용자는 다음의 이용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공용시설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의 시설물 사용규정(안)* 제10조

1. 시설물의 원래 사용목적 이외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이용시간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3. 시설물 이용 시 안전사항을 숙지하고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옥외 운동시설 사용 시 외각펜스에 부딪치는 소리, 야간에 고성방가 등으로 소음을 유발하여 입주자 등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5. 외부강사 초빙 시에는 사전에 반드시 관리주체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6. 어린이놀이터, 멀티구장 등의 시설은 가능한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에는 입주자 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기타 관리주체가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시설물 사용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설물 사용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5호에 근거해, 아파트 단지 내 공용시설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

이 경우에도 아파트 관리주체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관리사무소(「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등 관리주체에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보관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정보주체인 방문객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리사무소는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그 대상자의 사생활 침해로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6항내지제7항, 제16조)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및 제64조 등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사무소장의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없이 118번)를 통해 신고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2 외부인이 아파트 방문 시 경비실(관리주체)에서 방문객의 신분증을 요구해도 되는지

A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외부 방문자의 무단출입 제한 목적으로 신분증을 통해 신원확인인 가능하다, 신분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기에 가능하면 정보주체의 사생활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분증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돌려주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답변검토

「개인정보 보호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시설물 관리규정* 및 출입업체관리규정* 포함) 등에 근거해 살펴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제한하고, 주거공간의 보안을 유지하며 시설물 훼손방지와 공용자산 보호 등을 목적으로 출입자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방문자의 성명, 기본적인 연락처, 방문목적, 출입장소, 출입기간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기록·보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외부인의 출입 가능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

다만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일반적인 성명이나 연락처 정보에 비해 그 중요성이 높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서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률,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아파트 단지의 '출입업체관리규정'을 통해 '상품배달, 우편물 전달, 이사 및 공사, 각종 서비스제공 등을 위해 출입하는 모든 업체'에 대해 '임시출입카드'를 발급을 위해 별도로 보증금과 사용료 납부 등의 목적으로 확인용 서류(예: 사업자 등록,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업체 소속 증명서, 출입자 신분증 사본, 기타 확인 서류 등)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예: 출입자의 신분증)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사본을 보관해 두는 행위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위반)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출입관리 목적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고, 출입관리 목적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면, 적법한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함부로 처리해서는 아니되며, 단순히 해당 아파트 단지내 '출입업체관리규정'에 근거해 출입자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한다면,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마스킹(***) 처리된 공부(公簿) 서류 요청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접수한 이후에 뒷자리를 삭제 처리
- 서류/신분증 등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지체없이 반환

한편, 단순히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단순 보관하였다가 방문 종료 후 되돌려 주는 행위 등은 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2014). ☞분야별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 상담사례집 25페이지 참고

그러나 신분증의 물리적 보호조치가 소홀하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의 유출 등 침해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신분증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으로도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분증을 그 자리에서 확인만하고 돌려주는 것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편,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경비원 등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보관하게 될 경우, 해당 신분증이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예: 잠금장치 있는 캐비닛 보관 또는 가능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스트 잇 등으로 가림), 반드시 별도의 사본 작성(예: 사진촬영 등)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동별 대표자정보

Q1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에게 동별 대표자, 임대의 임원의 정보를 제공해도 되는지

A 해당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성명)는 해당 법령에 근거해 입주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동별대표자의 상세한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경우 해당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답변검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이러한 개인정보를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할 때, 동별대표자의 성명, 동호수, 연락처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는 적법한 처리 근거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③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④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근거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과 '관리주체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성명)는 해당 법령에 근거해 입주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처리해야 하므로, 동별대표자의 상세한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경우 해당 동별대표자 등 그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동별대표들의 연락처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관리사무소는 임원 및 동별대표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이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선거관리위원장을 대신해 제공 받은 아파트 관리비 미납내역을 정보주체인 입주민의 동의 없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대신하여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공고, 동대표 자격상실 공고' 목적으로 입주민 등에게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과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개인정보 보호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근거해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한 적법사유가 없다면, 해당 정보주체인 입주민 등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입주민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게시되는 내용은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6항내지제7항, 제16조)

Q2 관리사무소에서 동별 대표자, 입대의 임원 등의 비상연락망을 만들어 입주자에게 공개해도 되는지

A 가능하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기반으로 비상연락망을 공유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의 목적 달성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이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답변검토

「개인정보 보호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근거해 살펴보면, 관리사무소는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등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입주민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게시되는 내용은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6항내지제7항, 제16조)

한편,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근거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바, 가능하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기반으로 비상연락망을 공유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의 목적 달성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이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해당 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목적외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금지의무를 해당 정보를 공유하는 입주민 등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또한 해당 비상연락망의 공유 대상이 아닌 제3자에 대해 비상연락망의 정보가 제공 또는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한 관리사무소장의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없이 118번)를 통해 신고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상연락망의 공개 범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참고하시고, 만약 관리규약에서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소관부처인 국토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정보

Q1 입주자명부 작성에 대해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A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입주자명부 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합니다.

답변검토

아파트 관리사무소(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제시한 요건에 따른 적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률(법령 등)에 적법한 근거가 없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집·이용하여야 한다면 정보주체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이 가능한 적법요건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아파트 관리사무소(개인정보처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63조, 제64조 등 관리규약이 정한 바와 법령상 의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입주민 확인 및 차량 소유자 확인, 주차 관리 또는 입주자 명부 작성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는 수집·이용(보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입주자명부 작성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처리 범위 내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관리사무소에 있으니, 가능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거나 적법한 근거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가 수집·이용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편,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수집·이용을 할 수 없으며, 법률 및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수집 및 제공 등)를 요구·허용한 경우 등 외에는 수집이 금지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명부 작성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므로 입주자의 생년월일이 필요하다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입주자명부 양식을 수정하여 수집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마스킹(***) 처리된 서류를 요청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접수한 이후에 뒷자리를 삭제 처리하거나, 또는 서류를 확인만 하고 돌려주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Q2 입주자명부에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기재해도 되는지

- 입주자(세대주)의 경우 : 직장명, 가족사항(성명, 생년월일 등)
- 세입자의 경우 : 소유자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

A 입주자명부의 작성 시 관리업무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초과하는 개인정보(예: 직장명, 가족관계 및 인적사항 등)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동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합니다.

답변검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이러한 개인정보를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자명부(입주민명부/입주자카드)에는 입주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개인정보처리자)는 입주민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제시한 요건에 따른 적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률(법령 등)에 적법한 근거가 없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집·이용하여야 한다면 정보주체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이 가능한 적법요건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또한,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동의없이 수집·이용이 가능한 적법한 요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63조, 제64조 등에 근거한 관리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범위 내에서 입주자명부 작성에 대한 입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초과하는 경우(예: 직장명, 가족관계 및 인적사항 등)에는 가능하다면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동의를 받아 처리하기를 권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수집·저장하는 경우 해킹 등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고,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해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 제16조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목적을 위해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조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1항, 제6항)

따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적법하게 입주민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과도하게 수집하여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최소수집에 대한 입증책임은 관리사무소가 부담합니다.

입주자 성명, 전화번호 등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밖에 직장명, 직장 연락처, 가족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혼인여부 등)은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 과다수집에 해당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또한 세입자의 경우 소유자 정보를 입주자명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반드시 소유자 정보가 필요한 경우라면 수집·이용이 허용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과다수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공동주택 관계 법령, 규약 등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동법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3 임대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불법전대 확인을 위하여 입주자명부를 열람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A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불법 전대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건설회사가 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정당하게 입주자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경우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해당 업무 위수탁업체는 위수탁관계에 근거해 개인 정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검토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전대를 제한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9조의7(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에 근거해 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법 제53조제3항 및 시행령 제61조 제6항에 따라 국토부장관 등은 해당 행위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공동주택사업자(건설회사인 사업주체)에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거주실태 조사업무를 위수탁하고, 공동주택사업자가 다시 위탁관리업체에 아파트 단지관리 업무를 위수탁한 사안으로 이때 위수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의 위수탁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의 위탁과 제3자 제공은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공동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형태의 개인정보 처리로 파악될 수 있으나, '업무위탁'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제3자(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제3자 '제공'은 제공받는 자(제3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 및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가 이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위탁관리업체가 불법전대 확인을 위하여 입주자명부를 열람하는 행위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한 위수탁 관계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특별법

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근무·생업·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제49조의7(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동주택특별법 시행령

제6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한다.

3. 법 제49조의7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49조제7제1항에 따른 거주실태 조사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제6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48조의3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6의2. 법 제49조의7에 따른 거주실태 조사 및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Q4 하자보수금 등 청구소송 위임을 위해 관리사무소가 입주자의 동의 없이 입주자 명부를 법무법인에 제공해도 되는지

A 적법한 위임의 범위 내에서, 관리사무소가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에 입주자 명부를 제공하는 행위는 위수탁 관계에 근거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답변검토

아파트 관리사무소(개인정보처리자)가 입주민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제시한 요건에 따른 적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률(법령 등)에 적법한 근거가 없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집·이용하여야 한다면 정보주체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이 가능한 적법요건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하자보수청구와 관련해, 적법한 하자보수의 청구권자는 다음과 같이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 구분 | 하자 보수 청구권자 | 청구의 대행이 가능한 자 |
|------|---|---|
| 전유부분 |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 입주자는 전유부분에 대한 청구를 아래 '나. 관리주체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음 |
| 공용부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나.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함) 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 공용부분에 대한 청구를 좌측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

만약 위의 관계법령에 근거해 관리사무소가 관리주체를 대리해서,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라면, 소송을 위임받은 해당 법무법인은 소송대리인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제1항제6호(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이에 근거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위수탁관계)가 적용되어, 입주자명부를 법무법인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리사무소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이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과 사생활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위수탁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Q5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리사무소에 입주민 정보를 요구할 때 제공해도 되는지

- 목적: 업무효율성 향상(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한 입주민 전체 공지, 홍보목적 등)
- 입주민(소유자,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전화번호 등

A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이 규정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범위 내에서, 명시적으로 입주민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관리사무소는 정보주체(입주민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입주민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답변검토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의결기구(「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로 관련 판례에 따라 때, 비법인사단(대법원 2015.1.29.선고2014다62657판결)에 해당하며,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도 자치기구 내의 의결기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할 때,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근거한 하나의 개인정보처리자로 해석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업무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입주민등을 대표해서 입주민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기에,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임대사업자¹⁾를 의미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등이 정한 업무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입주민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어떠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공인지 아니면 처리위탁인지는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 여부, 수탁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여부,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각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 적법한 근거 없이 입주민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은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법령에서 부여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는 관리사무소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관리사무소장이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명시적 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관리규약에 따른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한바 있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16노1510 판결 참조).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2호(예, 공동주택관리법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또는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예,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로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주민 전체 공지 또는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은 목적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관리사무소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정보주체인 입주민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적법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는 법이 정한 바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주민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입주민등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은 후 처리하는 것이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적합하다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항목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다음 각호를 말함.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을 유지·보수 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Q6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를 실시할 때 아파트 관리소장이 보유한 입주민의 개인 정보 열람이 가능한지

A 관리소장은 감사 목적 달성의 범위 내에서 관계 법령 및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명시적 근거 없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열람시켜서는 안됩니다.

답변검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대법원은 어떠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공인지 아니면 처리 위탁인지는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 여부, 수탁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여부,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개인정보처리자 해당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의결기구(「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로 관련 판례에 따를 때, 비법인사단(대법원 2015.1.29. 선고2014다62657판결)에 해당하며,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도 자치기구 내의 의결기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할 때,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근거한 하나의 개인정보처리자로 해석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업무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입주민등을 대표해서 입주민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기에,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임대사업자²⁾를 의미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등이 정한 업무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입주민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 여부, 수탁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여부,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각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서로간에 적법한 근거 없이 입주민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법령에서 부여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는 관리사무소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구성원 중 하나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예, 공동주택관리법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또는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예,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안별로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해,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항목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다음 각호를 말함.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Q7 주민공동시설(도서관, 체력단련실 등) 이용 시 입주자정보를 수집해도 되는지

A 관계법령 및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아니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예: 동호수) 이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금지됩니다.

답변검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적법한 처리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할 때,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아파트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업무의 일환으로 외부 방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파트 관리주체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관리사무소(「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등 관리주체에 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는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업무의 일환으로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관한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공동주택 관계 법령, 규약 등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기관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므로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정보

Q1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 직원의 정보(인사기록) 열람 가능여부 및 열람 범위

- 직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사진, 학력, 경력, 자격증 취득현황 등

A 「공동주택관리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이 허용하는 적법사유가 아닌 경우, 해당 직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답변검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이러한 개인정보를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할 때, 관리사무소 직원의 정보(인사기록)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공유 포함)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예,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또는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예,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사무소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정보(인사기록)가 포함된 자료 등의 처리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입주민 개인이 관리사무소 직원의 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입주민 개인은 제3자에 해당하므로, 「공동주택관리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이 허용하는 적법사유가 아닌 경우, 해당 직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제64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제1항제17호는 입주자등의 자료 열람 대상에 대해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해 법원은 회의를 촬영한 영상들은 입주자가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선관위 회의록에 해당하지 않고, 관리규약에서 정한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영상정보 제공 행위를 관리규약에 따른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한바 있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16노1510 판결 참조). 따라서,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에 직원의 인사기록 정보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 처리원칙에 따른 때,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법 제3조제1항, 제6항내지제7항)

Q2 입대의 회장이 비공식적(개인적)으로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청소원의 정보(이름, 연락처, 입사일) 열람 가능 여부

A 「공동주택관리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이 허용하는 적법사유가 아닌 경우, 해당 직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답변검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대법원은 어떠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공인지 아니면 처리 위탁인지는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 여부, 수탁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여부,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개인정보처리자 해당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의결기구(「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로 관련 판례에 따른 때, 비법인사단(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다62657 판결)에 해당하며,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도 자치기구 내의 의결기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할 때,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근거한 하나의 개인정보처리자로 해석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업무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입주민등을 대표해서 입주민등의 개인정보 처리하고 있기에,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임대사업자³⁾를 의미하며, 「공동주택관리법」제 63조 등이 정한 업무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입주민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 여부, 수탁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여부,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각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서로 간에 적법한 근거 없이 입주민등 또는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2호(예, 공동주택관리법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또는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예,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로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에게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해당 자료를 제공(제3자 제공)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개인적 목적으로 관리사무소 직원의 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의 제공에 해당하여, 해당 직원의 동의가 없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관계법령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명시적으로 정한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한 적법사유가 없이, 단순히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7항에 근거해, 열람을 허용한 사안에서, 해당 관리소장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가 아니라, 명시적 근거 등 적법근거 없이 제3자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벌금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16노1510 판결 참조)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다음 각호를 말함.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 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장
공동주택 개인정보 상담사례

VIII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Q1 공동주택 복도에 입주인이 CCTV를 설치해도 되는지

A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공개된 복도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공유부분에 설치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지 판단하여 보아야 합니다. 또한, CCTV 설치자가 보호법 제26조에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답변검토

공개된 장소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소를 말하며, 신분증 제시를 통해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처럼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장소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음.

공동주택에서 공개된 복도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다만, 동별 외부인의 입출입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갖춘 공동주택이나, 단지 내 입주자만 이용 가능한 시설의 경우 “비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우(예: 정보주체의 동의 등) 또는 다음과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개인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함에 유의하여야 함.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예 】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함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할 경우, 법 제25조에 규정된 안내판 설치, 안전성 확보조치 및 자체 점검 실시, 영상정보처리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공개 및 책임자 지정,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및 보관·파기 철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 제35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열람에 응해야 함. 위반시 과태료에 해당함.

다만, 개인이 자신의 집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자신의 집에 출입하는 사람만을 촬영하는 경우 개인의 사적인 공간에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나, 이웃 또는 지나가는 사람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촬영각도를 조절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함.

어떤 경우이든 공동주택 복도에 CCTV 설치는 공용부분에 설치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이외에 공동주택관리법 등이 적용됨을 고려해야 함.

Q2 공동주택 승강기 내부 CCTV 영상을 입주민이 열람해도 되는지

A 정보주체는 본인의 영상에 대해서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 이외의 자(제3자)의 영상에 대하여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영자는 정보주체와 제3자가 함께 촬영된 영상에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등 비식별처리를 한 후 열람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답변검토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함(표준지침 제44조제3항).

관리사무소는 해당 CCTV 영상에 수록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열람을 허용하되, 관리사무소에서 관련 영상을 먼저 확인 후 해당 영상에 제3자를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비식별처리하여 정보주체의 영상 부분에 대해서만 열람하도록 하여 열람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함.

한편,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따른 사실확인을 하기 위해 현장에 입회한 사실만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제3자에게 영상정보를 열람하도록 할 근거는 되지 않으므로 경찰을 대동해도 정보주체가 제3자의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없음



Q3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설치한 CCTV를 모니터링해도 되는지

A 관리주체(공동주택관리사무소등)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설치한 CCTV를 모니터링하여 시설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나 모니터링하게 해서는 아니되고 필요최소한의 담당자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모니터링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반인이 볼 수 없도록 물리적 안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답변검토

공동주택처럼 공개된 장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관리규약에 따른 위반금 부과 목적 또는 교통법규 위반자를 신고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없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보호법 영 제25조 등에 따라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 보유자를 지정하여 설치목적 범위 내에서 영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최소한의 담당자만을 지정하여 개인정보가 모니터링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한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접근 권한이 없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함부로 조작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 없다는 사실 및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의 안내판을 모니터링 화면 옆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본체에 부착하여 접근 권한 없는 자의 임의적 접근 및 조작 등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간분야_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1. 4월)』 24면)

또한, CCTV 모니터링 장소는 접근권한이 있는 자만 입출입이 가능하고, 일반인의 접근이 차단된 물리적 안전을 확보한 장소로 제한하여야 하며,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제2장
공동주택 개인정보 상담사례

IX

기타

Q1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을 위해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입주자, 소유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를 요청해도 되는지

A 명시적 적법근거가 없다면, 관리주체는 관리단에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입주자,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답변검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제15조에 규정된 적법사유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근거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의 위탁과 제3자 제공은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공동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형태의 개인정보 처리로 파악될 수 있으나, ‘업무 위탁’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제3자(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제3자 ‘제공’은 제공받는 자(제3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 및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가 이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 법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바, 해당 법에서 위탁을 규정한 위수탁관계가 아니라면, 개인정보의 처리를 수반하는 위수탁관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집합건물법」 제2조의2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어,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집합건물법」 제47조제2항).

문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가 「집합건물법」에서의 관리단에게 입주자, 소유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것이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수 있는 바, 「집합건물법」 제23조에 근거해 관리단이 설립되고, 같은 법 제23조의2에 근거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소유자(입주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사생활 보호 등 권리보장을 위해 관리사무소는 소유자(입주자)에게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장합니다. 한편, 공동주택에 입주해 사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명백히 급박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관리단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공동주택 관계 법령, 규약 등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기관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므로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하자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관리사무소 등에 개인정보를 요청해도 되는지

A 명시적 적법근거가 없다면, 관리주체는 하자해결대책위원회에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입주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답변검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제15조에 규정된 적법사유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근거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편, 하자보수청구와 관련해, 적법한 하자보수의 청구권자는 다음과 같이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 구분 | 하자 보수 청구권자 | 청구의 대행이 가능한 자 |
|------|---|---|
| 전유부분 |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 입주자는 전유부분에 대한 청구를 아래 '나. 관리주체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음 |
| 공용부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나.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함) 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 공용부분에 대한 청구를 좌측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

공용부분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것이기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건으로 하고, 해당사안을 개인정보처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유부분의 하자문제 해결로 국한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만약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근거할 때,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의 보수청구권은 '관리주체가 대행할 수 있으나, 하자 종료 후 하자해결 등 하자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은 전유부분의 소유자 등 입주자등의 사적 문제이므로, 입주자등의 동의가 없으면, 정당한 권원을 갖는다 할 수 없으므로,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등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www.adc.go.kr/>)의 신청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공동주택 관계 법령, 규약 등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기관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므로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3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외부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입주민(소유자)으로부터 재건축 추진위 설립 동의서(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받아도 되는지

A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외부 용역업체는 위수탁관계에 따른 위수탁 계약서의 작성과 관리감독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하며,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외부 용역업체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합니다.

답변검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의 위탁과 제3자 제공은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공동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형태의 개인정보 처리로 파악될 수 있으나, ‘업무위탁’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제3자(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제3자 ‘제공’은 제공받는 자(제3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 및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가 이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 법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바, 해당 법에서 위탁을 규정한 위수탁관계가 아니라면, 개인정보의 처리를 수반하는 위수탁관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현행, 해당 사안의 경우 단순히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다음의 사항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 ①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 ② 동의로 인해 의제되는 사항
- ③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

그리고 같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법정 동의사항을 받을 경우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1항). 만약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2항).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7조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한편,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다만, 대법원은 “유효한 재건축결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최초의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에만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니고 비록 최초의 관리단집회에서의 재건축동의자가 재건축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제출함으로써 재건축결의의 정족수를 갖추게 된다면 그로써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와는 별도의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재건축결의의 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재건축결의가 반드시 재건축조합의 창립총회에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64559 판결). 즉, 서면결의에 의한 재건축결의의 성립 시점은 5분의 4 이상이 찬성한 무렵이 되며,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유효한 서면동의를 받기 위해 외부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입주인(소유자)으로부터 재건축 추진위 설립 동의서(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받는 행위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수반하는 위수탁관계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동의대상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공동주택 관계 법령, 규약 등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기관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므로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외부 용역업체는 위수탁관계에 따른 위수탁 계약서의 작성과 관리감독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Q4 관리사무소에서 임대인(소유자)에게 임차인(세입자)의 아파트 관리비 연체내용을 알려줘도 되는지

A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임차인 동의 없이 연체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정보주체인 임차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답변검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공유 포함)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예,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또는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예,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리사무소(개인정보처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입자(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소유자(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임차인이 관리비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릴 것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차인 동의 없이 연체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은 관리주체가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들에게 개별 통지하는 방식으로 다음의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들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 ② 관리비등의 부과명세(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이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명세를 말한다) 및 연체 내용
- ③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의 현황
- ④ 입주자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 ⑤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 ⑥ 관리주체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임대인은 규약에 달린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공동주택 관계 법령, 규약 등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기관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므로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5 관리사무소에서 어린이집 임대료 금액의 월별 증빙자료* 요청시 제공해도 되는지

- 월별 출석부, 어린이집 지원시스템현원 확인창, 맞춤 및 종일에 대한 현황, 월별 보육료 지원금액 등

A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없는 개인정보의 처리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익명/가명처리토록 주의 를 기울여야 합니다.

답변검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유치원의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3호(예,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로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가 귀 어린이집에 개인정보(실제 원아의 주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Q6 피신고업체가 비공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정보를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제공해도 되는지

A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민원인의 동의 없이 민원인의 정보를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제공한 행위는 해당 민원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답변검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신고업체가 비공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민원인의 별도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제공한 행위는 동조 위반으로 개인정보 목적외 제공에 해당합니다.

민원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에서도 민원업무를 쉽게 해결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피민원이나 피민원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불가피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Q7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업무목적으로 개설한 단체 채팅방에 입주민의 동, 호수, 전화번호 등 정보가 채팅내용에 포함되어도 되는지

A 비밀대화방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소장은 해당 업무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토록 하고 해당 대화방에 최소한의 적법한 권원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답변검토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의 안전한 관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규정된 안전성확보조치기준(고시)은 제6조제3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 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목적 내에서 단체 채팅방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급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및 안전성확보조치기준고시의 의무조치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업무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업무 목적으로 SNS를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직원(개인정보취급자)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비밀대화방에서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안전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휴대전화 잠금장치 설정, 채팅방의 비밀번호 설정과 공공와이파이 지역에서의 SNS이용 금지 등 안전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소장은 해당 업무 목적 달성 시 파기 여부 및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업무 목적으로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대화방에 최소한의 적법한 권원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제3장

관리규약 제·개정 시 권고사항

공동주택 입주자 편의 제공 및 민원최소화를 위해 관리규약에 반영할 권고사항을 제공함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 입주자대표회의 시 실시간 중계 및 녹음·녹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녹음·녹화물에 대한 관리(보관기간 등) 및 입주민 열람 요구 시 공개·열람 방법,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의 규정을 권고함
 - 녹음·녹화물의 경우 그 자체로 개인이 식별될 수 있고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열람 및 공개 방법을 마련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및 입주민의 회의록 열람 방법,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 회의록에 발언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을 열람하도록 함

■ 주차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주차관리를 위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 및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고 가급적이면 수집·보관이 아닌 확인 후 파기 또는 정보주체에게 돌려주도록 함
- 입주민 차량에 부착하는 차량식별카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며, 입주민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보만을 기재
- 특히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서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률,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가 아닌 한 동법 위반소지에 주의
 - 단순히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되돌려 주는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육안으로 확인하고 돌려주는 방식을 규정

■ 관리비 및 회계 관련 정보 열람·공개

-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 및 보관기간을 기재하고, 해당 자료의 보존기간을 공동주택 관리법령 및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정하도록 함
- 입주민이 해당 자료에 대하여 열람 및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구체적인 열람 범위, 열람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사생활 침해 위험이 있는 정보 등의 경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열람·공개 방법을 마련

■ 업무목적의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

- 업무목적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하고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입주민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 입주민명부 작성을 위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 및 구체적인 이용 목적, 보관 기간, 보관방법, 파기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함
 - 입주자 성명, 전화번호 등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밖에 직장명, 직장 연락처, 가족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혼인여부 등)은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 과다수집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 방문객 신분확인에 관한 사항

-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제한하고 주거공간의 보안유지 등을 위해 방문객의 신분확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인 신분확인 방법과 절차, 신분확인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 다만 이 경우에도 방문객 신분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제24조의2에서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므로, 신분증 확인 등을 취하는 경우 육안으로 확인 후 바로 돌려주는 방식을 명시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부록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3. 24.>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2. 4.>

②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2. 4.>

1. 제7조의8제3호 및 제4호의 사무
2. 제7조의9제1항의 심의·의결 사항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 ③ 삭제 <2020. 2. 4.>
- ④ 삭제 <2020. 2. 4.>
- ⑤ 삭제 <2020. 2. 4.>
- ⑥ 삭제 <2020. 2. 4.>
- ⑦ 삭제 <2020. 2. 4.>
- ⑧ 삭제 <2020. 2. 4.>
- ⑨ 삭제 <2020. 2. 4.>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위원 중 2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3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 또는 단체(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에 3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
4.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 ④ 위원장, 부위원장, 제7조의13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7조의3(위원장) ① 위원장은 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4.]

제7조의4(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꺾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7조의5(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의7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7조의6(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 ② 제1항에 따른 영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 2. 4.]

제7조의7(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같은 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계획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협력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정책·제도·실태 등의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본조신설 2020. 2. 4.]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에 관한 사항
6.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7. 제33조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8. 제28조의6, 제34조의2, 제39조의1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9. 제6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10.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11. 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
12.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13.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14. 소관 법령 및 보호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5.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2.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⑤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20. 2. 4.]

제7조의10(회의) ①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은 보호위원회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 ③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7조의11(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연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호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4.]

제7조의12(소위원회) ① 보호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반복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은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7조의13(사무처) 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보호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7조의14(운영 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8조 삭제 (2020. 2. 4.)

제8조의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의 소관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9조(기본계획)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4.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의 활성화
5. 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의 활성화
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규 준수 현황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2017. 7. 26., 2020. 2. 4.>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시행 지원
4.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시행 지원
5.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국제적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6.>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 8. 6.]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3. 29.>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9.>

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 3. 29.>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2017. 7. 26., 2020. 2. 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 3. 29., 2017. 4. 18.>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4. 18.>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 8. 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15. 7. 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7. 7. 26., 2020. 2. 4.>

[본조신설 2013. 8. 6.]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 ⑦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 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신설 2020. 2. 4.>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절차, 관리·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①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28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중 큰 금액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28조의7(적용범위)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1조,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의3, 제39조의4, 제39조의6부터 제39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29조(안전조치 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3의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 ③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⑤ 제1항에 따른 등록과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2. 4.>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2.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3.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실효성 유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2. 4.>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인증, 제3항에 따른 인증 취소,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및 제7항에 따른 인증 심사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2. 4.>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심사를 수행할 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등에 관하여는 전문성과 경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그 밖에 개인정보 관리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안전성 확보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②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육성,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⑥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평가기준, 영향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20. 2. 4.>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20. 2. 4.>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2.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주민등록번호의 정도

3.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⑤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6.]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제39조의7에 따른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삭제 <2015. 7. 24.>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7. 24.>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6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신설 2020. 2. 4.>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이용자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①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보호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0. 2. 4.]

제39조의5(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대한 특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 제39조의3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17조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39조의9(손해배상의 보장)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39조의10(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39조의11(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2. 제39조의4에 따른 통지·신고
3.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2. 4.]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이라 한다)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제3국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본다.
- [본조신설 2020. 2. 4.]

제39조의13(상호주의) 제39조의12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 2. 4.]

제39조의14(방송사업자등에 대한 특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은 조 제6호·제9호·제12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시청자”는 “이용자”로 본다.

[본조신설 2020. 2. 4.]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①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한 경우
2. 제22조제6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3. 제23조제1항제1호(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수집한 경우
4. 제26조제4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특례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9조의 조치(내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39조의3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7. 제39조의12제2항 본문(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비슷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정 2020. 2. 4.>

제40조(설치 및 구성)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7. 24.>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1.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4.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5.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 ⑤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 ⑦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보호위원회는 분쟁조정 접수, 사실 확인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 ⑨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4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3조(조정신청 등) 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44조(처리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5조(자료의 요청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6조(조정 전 합의 권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7조(분쟁의 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④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48조(조정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9조(집단분쟁조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⑥ 제4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정보주체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 ⑦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⑧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조정절차 등) ①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개정 2020. 2. 4.>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 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 나.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제52조(전속관할) 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제1항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53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54조(소송허가신청) ①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정보주체의 침해된 권리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제기단체가 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2.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55조(소송허가요건 등)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제54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②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56조(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51조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2.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제57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①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② 제55조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③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장 보칙 <개정 2020. 2. 4.>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2. 국가안전보장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②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제15조, 제22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8조의2(적용제외) 이 법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60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1. 제7조의8 및 제7조의9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
- 1의2.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업무
2. 제33조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3. 제40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이나 조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상담
2. 사실의 조사·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딸린 업무

④ 보호위원회는 제3항제2호의 사실 조사·확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20. 2. 4.>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④ 보호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검사권한을 수행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말한다)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보호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이 해당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2. 4.>

⑤ 보호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검사권한을 수행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말한다)에게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하거나, 처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⑥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4.>

⑦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2017. 7. 26., 2020. 2. 4.>

⑧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자료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2. 4.>

⑨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제64조(시정조치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 법을 위반한 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1.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2.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② 보호위원회는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자(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을 포함한다)를 징계할 것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발을 하거나 소속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결과와 공표) ①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の内容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연차보고) ① 보호위원회는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최 전까지 국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3. 29.>

1.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및 그 구제현황
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결과
3.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추진현황 및 실적
4. 개인정보 관련 해외의 입법 및 정책 동향
5.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된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의 제정·개정 현황
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시책에 관하여 공개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제69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0. 2. 4.>

②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0. 2. 4.>

제10장 별칙 <개정 2020. 2. 4.>

제70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24.>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

제71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 4의2. 제28조의3을 위반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
- 4의3.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 4의4. 제36조제2항(제27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와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제38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 4의5. 제39조의3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 4의6. 제39조의3제4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25 조 제 5 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24., 2016. 3. 29., 2020. 2. 4.>

1.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1의2. 제21조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3.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제74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의2(몰수·추징 등)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8. 6., 2014. 3. 24., 2015. 7. 24., 2016. 3. 29., 2017. 4. 18., 2020. 2. 4.>
 1.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3항 또는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3.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제39조의6(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4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 4의3.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6.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 7의2. 제2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회수·파기하지 아니한 자
 - 7의3.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8.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9.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11.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2의2. 제39조의3제3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 12의3. 제39조의4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보호위원회 및 전문기관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한 자
 - 12의4. 제3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12의5. 제39조의7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동의 철회·열람·정정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 12의6. 제39조의7제3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와 제27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12의7. 제39조의8제1항 본문(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12의8. 제39조의12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2. 4.>

1. 제39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9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39조의1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39조의12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위탁·보관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2020. 2. 4.>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3.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

5.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6.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6의2. 제2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7.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8.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 제35조제3항·제4항, 제36조제2항·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0.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1. 제63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 8. 6.]

부칙 <제16930호, 202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보호위원회의 위원
의 임기는 이 법 시행 전 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보호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7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는
보호위원회가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의 행위와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 중 그 소관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보호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보호위원회의 행위 또는 보호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신고 등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행위 중 그 소관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호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행위 또는 보호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보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행위나
보호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행위나 보호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7조의3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 제32조의2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거나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은 자는 이 법 제32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거나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전문기관은 이 법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권한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개인정보보호윤리”를 “인터넷 윤리,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으로 한다.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에게”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로 한다.

③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를 “전자정부”로 한다.

④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6항제1호 중 “관계 행정기관〔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포함한다”를 “관계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이 법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승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의 사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보호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행정안전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보호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통신망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2호, 2020. 8. 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7. 14.>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 1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4조 삭제 <2020. 8. 4.>

제4조의2(영리업무의 금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 법 제7조의9제1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가 조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20. 8. 4.]



제5조(전문위원회)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의9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8. 4.>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6. 7. 22., 2020. 8. 4.>

1. 보호위원회 위원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사업자단체에 속하거나 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삭제 <2020. 8. 4.>

제5조의2(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안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를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법령의 제·개정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협력 및 의견조정
4.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5. 개인정보 보호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회가 필요한 사항

③ 정책협의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정책협의회의 의장(이하 이 조에서 “의장”이라 한다)은 보호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정책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또는 분야별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 및 분야별 협의회 의장은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⑥ 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야별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출석,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4.]

제5조의3(시·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도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
2. 관계 기관·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전달
3.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
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도 협의회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4.]

제6조(의사의 공개) 보호위원회의 의사(議事)는 공개한다. 다만,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 보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20. 8. 4.)

제9조(출석수당 등) 보호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정책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법 제7조의9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출석한 사람,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사람 또는 정책협의회에 출석한 사람에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8. 4.>

제9조의2(정책·제도·법령 개선 권고의 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의9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정책·제도 및 법령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8. 4.>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의9제5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권고사항의 이행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8. 4.>

[본조신설 2016. 7. 22.]

제9조의3(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이하 “침해요인 평가”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법령안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제도의 목적과 주요 내용
2.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제도의 도입·변경에 따른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자체 분석

3.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제도의 도입·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대책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요인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2.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의 적정성

3.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

4. 그 밖에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법령안에 반영하는 등 권고내용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7. 22.]

제10조 삭제 (2020. 8. 4.)

제3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3년마다 법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3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2020. 8. 4.>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중장기 계획과 시책 등을 반영한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의 목표, 추진방향 및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③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해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2020. 8. 4.>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기본계획 중 다음 해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8. 4.>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그 해 12월 31일까지 심의·의결해야 한다. <개정 2020. 8. 4.>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의 관리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4. 정보주체의 열람,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처리정지의 요구 및 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법 제11조제1항”은 “법 제11조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제14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보호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4.]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5.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7.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8.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대상·방법·절차) ①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하는 자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라 알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1조 또는 제37조제4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2. 알린 시기
3. 알린 방법

[본조신설 2016. 9. 29.]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6.>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 10. 17.>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
 - 나. 제1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거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사항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0., 2017. 10. 17.>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2017. 10. 17.>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방법 중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별 업무, 업종의 특성 및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의방법에 관한 기준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개인정보 보호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2017. 10. 17.>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 9. 29., 2020. 8. 4.>

-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 9. 29., 2017. 6. 27., 2020. 8. 4.>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제20조 삭제 <2014. 8. 6.>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 또는 제4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는 “법 제24조제3항”으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로 본다. <개정 2020. 8. 4.>

②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
2.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2년마다 1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온라인 또는 서면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⑤ 법 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전문개정 2016. 9. 29.]

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하는 암호화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암호화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2017년 1월 1일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2018년 1월 1일

③ 보호위원회는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암호화 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본조신설 2015. 12. 30.]

제2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의 예외) ①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5. 29., 2020. 8. 4.>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정하여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관계 전문가
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급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1. 삭제 <2016. 9. 29.>
2. 삭제 <2016. 9. 29.>
3. 삭제 <2016. 9.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1.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

-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2. 산불감사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으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2020. 8. 4.>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영업소·사무소·점포 등(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실는 방법
- ④ 법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9. 29.>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법 제30조제2항”은 “법 제25조제7항”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으로 본다. <개정 2016. 9. 29.>

제26조(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① 법 제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2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보호위원회는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위탁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위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실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실는 방법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④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위탁자가 과실 없이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⑥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독하여야 한다.

제29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영업양도자등”이라 한다)가 과실 없이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 8. 4.>

1.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
2.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실는 방법

제4장의2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신설 2020. 8. 4.>

제29조의2(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명정보의 결합·반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2.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고 가명정보의 결합·반출 관련 정책 및 절차 등을 마련할 것
3.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재정 능력을 갖출 것
4.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66조에 따른 공표 내용에 포함된 적이 없을 것

②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규약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③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결합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이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결합전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⑤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합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결합전문기관 스스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결합 및 반출 등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⑥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 ⑦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거나 보호위원회 또는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합전문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재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본조신설 2020. 8. 4.]

제29조의3(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 ① 결합전문기관에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결합신청자”라 한다)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결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결합신청자 관련 서류
 2. 결합 대상 가명정보에 관한 서류
 3. 결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에 필요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② 결합전문기관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보호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결합신청자는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를 결합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결합전문기관에 설치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에서 제2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를 가명정보 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결합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결합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반출을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결합된 정보의 반출을 승인하기 위하여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1. 결합 목적과 반출 정보가 관련성이 있을 것
 2.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을 것
 3. 반출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이 있을 것
- ⑤ 결합전문기관은 결합 및 반출 등에 필요한 비용을 결합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명정보의 결합 절차와 방법, 반출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8. 4.]

제29조의4(결합전문기관의 관리·감독 등) ①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결합전문기관의 업무 수행능력 및 기술·시설 유지 여부 등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② 결합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명정보의 결합·반출 실적보고서
2.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1. 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승인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
2. 결합신청자의 가명정보 처리 실태
3. 그 밖에 가명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8. 4.]

제29조의5(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 및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이하 이 조에서 “추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2. 2.>

1. 제30조 또는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2.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다만, 추가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3.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분리.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가명정보를 취급할 자를 추가로 둘 여력이 없는 경우 등 접근 권한의 분리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 권한만 부여하고 접근 권한의 보유 현황을 기록으로 보관하는 등 접근 권한을 관리·통제해야 한다.

② 법 제28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2.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3.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4.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5. 그 밖에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8. 4.]

제29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28조의6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절차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0. 8. 4.]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9. 29., 2020. 8. 4.>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2. 삭제 <2020. 8. 4.>
 3. 제30조 또는 제4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실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실는 방법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① 법 제3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3.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6. 7. 22.>
1.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나. 가목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마. 시·도 및 시·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바. 시·군 및 자치구: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사. 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2.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
 - 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 없이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 8. 4., 2021. 2. 2.>
-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법 제31조제2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제33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3.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4. 제4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5.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제34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법 제32조제1항 및 이 영 제33조에 따른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 후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을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제34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방법·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4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대책의 수립 등을 포함한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② 법 제32조의2제1항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3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34조의6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 대상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목록
2.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는 방법과 절차
3.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및 보호대책 구현과 관련되는 문서 목록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과 인증의 범위 및 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는 제34조의8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이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⑤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인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신청, 인증심사, 인증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인증서의 발급 등 개인정보 보호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본조신설 2016. 7. 22.]

제34조의3(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수수료) ① 신청인은 인증기관에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에 투입되는 인증 심사원의 수 및 인증심사에 필요한 일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본조신설 2016. 7. 22.]

제34조의4(인증취소) ①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본조신설 2016. 7. 22.]

제34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①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법 제3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본조신설 2016. 7. 22.]

제34조의6(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 ①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9. 29., 2017. 7. 26., 2020. 8. 4.>

1. 한국인터넷진흥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보호위원회가 지정·고시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 가. 제34조의8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 5명 이상을 보유할 것
 - 나. 보호위원회가 실시하는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지정과 그 지정의 취소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본조신설 2016. 7. 22.]

제34조의7(인증의 표시 및 홍보) 법 제32조의2제6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받은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본조신설 2016. 7. 22.]

제34조의8(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①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7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인증심사에 필요한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7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와 관련하여 금전, 금품, 이익 등을 부당하게 수수한 경우
3.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 교육과정의 이수, 인증심사원 자격의 부여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본조신설 2016. 7. 22.]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말한다. <개정 2016. 9. 29.>

1.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3.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파일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6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2. 개인정보 보유기간

제37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2., 2017. 7. 26., 2020. 8. 4.>

1. 최근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의 대가로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법인
가. 영향평가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

-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축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 보호 대책의 제시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
 - 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에 해당하는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
 - 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2. 별표 1의2에 따른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3. 다음 각 목의 사무실 및 설비를 갖춘 법인
 - 가.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를 위한 설비를 갖춘 사무실
 - 나. 기록 및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설비
- ②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2020. 8. 4.>
1. 정관
 2. 대표자의 성명
 3. 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③ 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보호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고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1. 평가기관의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와 대표자의 성명
 2. 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 그 조건의 내용
- 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평가기관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나 폐업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6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향평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은 지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2020. 8. 4.>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3. 평가기관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보호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22.>

1. 해당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는 개인정보의 종류·성질, 정보주체의 수 및 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2. 법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및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수준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3.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별 조치 여부

4.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의무 위반 요소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제3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기 전에 그 영향평가서를 보호위원회에 제출(영향평가서에 제3호에 따른 개선 필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 내용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2017. 7. 26., 2020. 8. 4.>

1. 개인정보파일 운용과 관련된 사업의 개요 및 개인정보파일 운용의 목적

2. 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개요

3.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평가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4. 영향평가 수행 인력 및 비용

③ 보호위원회는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 및 영향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제39조(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범위 및 기관) ①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란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 10. 17.>

② 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각각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개정 2015. 12. 30., 2016. 7. 22.>

제40조(개인정보 유출 통지의 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유출 사실을 알고 긴급한 조치를 한 후에도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구체적인 유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유출이 확인된 사항만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릴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3항 및 이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서면등의 방법과 함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제4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0. 8. 4.>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④ 법 제34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8. 6.]

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17.>

1.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
- ③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해당 공공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2020. 8. 4.>
- ④ 법 제3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7.>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시간 및 장소 등(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만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포함한다)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열람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즉시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2020. 8. 4.>

제42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연기 및 거절)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열람의 연기·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때에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하되, “열람”은 “정정 또는 삭제”로 본다. <개정 2017. 10. 17.>

②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정정·삭제하거나 그 개인정보 정정·삭제에 관한 요구 사항을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2020. 8. 4.>

제44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때에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하되, “열람”은 “처리 정지”로 본다. <개정 2017. 10. 17.>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2020. 8. 4.>

제45조(대리인의 범위 등)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제46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정·삭제, 제44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또는 법 제39조의7제1항에 따른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 이 조, 제47조 및 제48조에서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등요구를 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4.>

②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없거나 정보주체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수수료 등의 금액 등)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낸다. 다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2.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제48조(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 및 그에 대한 통지를 갈음하여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그 밖의 절차를 정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등요구 및 그에 대한 통지에 관한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제6장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신설 2020. 8. 4.>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로부터 이용자(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지휘·감독을 받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
 - 다.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
 -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운영
 -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 인터넷망 차단[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만 해당한다

라.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 및 운영

마.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감독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의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

4.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나.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및 제18조제3호에 따른 정보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라.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백신소프트웨어 설치 및 주기적 갱신·점검 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8. 4.]

[중전 제48조의2는 제48조의14로 이동 (2020. 8. 4.)]

제48조의3(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39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意的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4.]

제48조의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신고해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제4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호위원회에 소명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4.]

제48조의5(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 서비스를 법 제39조의6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해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법 제39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해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③ 법 제39조의6제2항에서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2.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리되어 저장·관리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분리·저장되어 관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④ 법 제39조의6제2항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8. 4.]

제48조의6(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법 제39조의8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 ②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한다.

③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4.]

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하 이 조에서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라 한다)은 법 제39조의9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1.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 것

②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최저가입금액(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소적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다만,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별표 1의4에서 정한 최저가입금액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③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의9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8. 4.]

제48조의8(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요청 기관) 법 제39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이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8. 4.]

제48조의9(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39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3.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8. 4.]

제48조의10(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법 제39조의12제2항 본문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야 하는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법 제39조의12제2항 본문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에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전받는 자와 미리 협의하고 이를 계약내용 등에 반영해야 한다.

③ 법 제39조의12제2항 단서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8. 4.]

제48조의11(과징금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9조의15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39조의15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39조의15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별표 1의5와 같다.

[본조신설 2020. 8. 4.]

제48조의1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보호위원회가 법 제39조의15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부과금액·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4.]

제48조의13(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39조의15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8. 4.]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48조의14(당연직위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보호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본조신설 2016. 7. 22.]

[제48조의2에서 이동 <2020. 8. 4.>]

제49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1명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 7. 22.>

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날짜·시간·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조정부의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조정부의 장은 조정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0조(사무기구) ①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분쟁조정 접수 및 사실 확인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처리는 보호위원회의 사무기구가 수행한다. <개정 2020. 8. 4.>

② 사무기구는 분쟁조정 접수·진행 및 당사자 통지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업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8. 4.>

[전문개정 2016. 7. 22.]

제51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날짜·시간·장소 및 안전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다음 각 목의 정보주체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일 것
가.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주체
나.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주체
다. 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정보주체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제53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①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0.>

제54조(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 신청)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법 제49조제2항 후단의 공고기간에 문서로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참가 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 인정 여부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55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①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후 제5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정보주체는 당사자에서 제외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5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고 나면 그 후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중 일부가 같은 조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더라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한다.

제56조(수당과 여비)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분쟁조정 세칙)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집단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58조(개선권고 및 징계권고) ① 법 제61조제2항·제3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법 제65조제2항·제3항에 따른 징계권고는 권고 사항, 권고 사유 및 조치 결과 회신기간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는 권고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권고 내용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보호위원회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제6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30., 2017. 7. 26., 2020. 8. 4.>

③ 보호위원회는 법 제63조제4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검사권한을 수행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검사 대상 및 사유를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보호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해당 공무원이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8. 4.>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사 일정, 검사 범위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 8. 4.>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검사 계획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검사 기간은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8. 4.>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받거나 처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0. 8. 4.>

⑦ 보호위원회는 법 제63조제7항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대응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8. 4.>

제61조(결과의 공표) ①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1. 위반행위의 내용
2. 위반행위를 한 자
3.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고발, 징계권고 및 과태료 부과 내용 및 결과

②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③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제62조(권한의 위탁) ① 삭제 <2015. 12. 30.>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대체가입수단 제공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30., 2017. 7. 26., 2020. 8. 4.>

1.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 한국인터넷진흥원
3. 대체가입수단의 개발·제공·관리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기관·단체

③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30., 2017. 7. 26., 2020. 8. 4.>

1.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2.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육성 및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열람 요구의 접수 및 처리
4. 법 제6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법 제62조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상담과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5. 제37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접수
 ④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를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15. 12. 30., 2017. 7. 26., 2020. 8. 4.>

제6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호위원회(제62조제3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8. 4.>

1. 법 제7조의9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무
2.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법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제반조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의6, 제34조의2 및 제39조의15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5. 법 제63조제1항,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검사 및 점검에 관한 사무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 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8. 4.>

[본조신설 2014. 8. 6.]

[제목개정 2020. 8. 4.]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 8. 4.>

1. 제48조의6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해야 하는 자의 범위, 통지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 및 통지 주기와 방법: 2020년 8월 5일
2. 제48조의7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2020년 8월 5일

②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7. 26., 2020. 8. 4.>

1. 삭제 <2018. 12. 24.>
2.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2015년 1월 1일
- 2의2. 제37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요건 등: 2016년 1월 1일
3. 삭제 <2018. 12. 24.>
4. 삭제 <2018. 12. 24.>
5. 삭제 <2018. 12. 24.>

③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매 1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 8. 4.>

1. 제29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2020년 8월 5일
 2. 제2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2020년 8월 5일
- [전문개정 2014. 12. 9.]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8. 4.>

부칙 <제30892호, 2020. 8.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행한 지정, 조치, 통지,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개인정보로서 제18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사목을 삭제한다.

②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4항”을 “제36조제2항, 제37조제4항 및 제39조의7제3항”으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18호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제1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8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29조의6제4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감경,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감경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과징금의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사유

가. 기준금액의 산정

1) 기준금액은 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 |
|-------------|---------|
| 위반행위의 중대성 | 부과기준율 |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27 |
|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21 |
| 일반 위반행위 | 1천분의 15 |

2) 제29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위반행위의 중대성 | 기준금액 |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3억 6천만원 |
| 중대한 위반행위 | 2억 8천만원 |
| 일반 위반행위 | 2억원 |

3)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고의·중과실 여부, 영리 목적의 유무,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 개인정보의 공중에 노출 여부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필수적 가중·감경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해야 한다.

다. 추가적 가중·감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3. 세부 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필수적 가중·감경 및 추가적 가중·감경을 위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제37조제1항제2호 관련)

1.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시행하는 정보보호전문가(SIS)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자정부법」 제60조에 따른 감리원(ISA)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중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기사 또는 정보통신기사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제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의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제정보시스템보안자격협회(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 Security Certification Consortium)의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자격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의 임직원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암호기술, 인증기술 등을 말한다), 시스템·네트워크 보호(시스템 보호, 해킹·바이러스 대응, 네트워크 보호 등을 말한다) 또는 응용서비스 보호(전자거래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정보보호 표준화 등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계획, 분석, 설계, 개발, 운영, 유지·보수, 감리, 컨설팅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0조의2제1항 관련)

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은 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되, 가목의 위반 정도에 따른 산정기준액에 나목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등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다목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을 거쳐 라목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과징금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한다.

가. 기본 산정기준

| 위반 정도 | 산정기준액 | 비 고 |
|-------------|---------|---|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3억 5천만원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10만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이하 "분실등"이라 한다)된 경우를 말한다. |
| 중대한 위반행위 | 2억 3천만원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10만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등이 된 경우 및 경과실로 인하여 10만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등이 된 경우를 말한다. |
| 일반 위반행위 | 1억원 | 경과실로 인하여 10만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등이 된 경우를 말한다. |

나. 1차 조정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다. 2차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협조 여부, 위반행위에 따른 추가적 피해 발생 여부, 평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산정

개인정보처리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그 위반행위가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4] <신설 2020. 8. 4.>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의 기준(제48조의7제2항관련)

|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의 가입금액 산정요소 | | 최저가입금액 (최소적립금액) |
|--------------------------|------------------|--------------------|
| 매출액 | 이용자 수 | |
| 800억원 초과 | 100만명 이상 | 10억원 |
|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 | 5억원 |
|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 | 2억원 |
| 800억원 초과 |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 5억원 |
|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 | 2억원 |
|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 | 1억원 |
| 800억원 초과 | 1천명 이상 10만명 미만 | 2억원 |
|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 | 1억원 |
|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 | 5천만원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신설 2020. 8. 4.>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48조의11제4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39조의15제3항 각 호에 따른 고려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호 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감경,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감경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9조의1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과징금의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준금액의 산정

1) 기준금액은 제48조의11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 |
|-------------|---------|
| 위반행위의 중대성 | 부과기준율 |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27 |
|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21 |
| 일반 위반행위 | 1천분의 15 |

2) 제48조의11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위반행위의 중대성 | 기준금액 |
|-------------|---------|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3억 6천만원 |
| 중대한 위반행위 | 2억 8천만원 |
| 일반 위반행위 | 2억원 |

3)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고의·중과실 여부, 영리 목적의 유무,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 개인정보의 공중에 노출 여부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필수적 가중·감경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해야 한다.

다. 추가적 가중·감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3. 세부 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필수적 가중·감경 및 추가적 가중·감경을 위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가.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 법 제75조 제1항제1호 | 1,000 | 2,000 | 4,000 |
| 나. 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1호 | 600 | 1,200 | 2,400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다. 법 제16조제3항 또는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2호 | 600 | 1,200 | 2,400 |
| 라.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3호 | 600 | 1,200 | 2,400 |
| 마. 법 제21조제1항·제39조의6(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4호 | 600 | 1,200 | 2,400 |
| 바.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4항제1호 | 200 | 400 | 800 |
| 사.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 | 법 제75조 제4항제2호 | 200 | 400 | 800 |
| 아. 법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1항제2호 | 1,000 | 2,000 | 4,000 |
| 자.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6호 | 600 | 1,200 | 2,400 |
| 차.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4호의2 | 600 | 1,200 | 2,400 |
| 카. 법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4호의3 | 600 | 1,200 | 2,400 |
| 타. 법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5호 | 600 | 1,200 | 2,400 |
| 파.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한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7호 | 600 | 1,200 | 2,400 |
| 하.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한 경우 | 법 제75조 제1항제3호 | 1,000 | 2,000 | 4,000 |
| 거.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4항제3호 | 200 | 400 | 800 |
| 너.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4항제4호 | 200 | 400 | 800 |
| 더.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4항제5호 | 200 | 400 | 800 |
| 러.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4항제6호 | 200 | 400 | 800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머. 법 제2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4항제6호의2 | 200 | 400 | 800 |
| 버. 법 제2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않거나 이를 회수·파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7호의2 | 600 | 1,200 | 2,400 |
| 서.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4항제7호 | 200 | 400 | 800 |
| 어.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4항제8호 | 500 | | |
| 저. 법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7호의3 | 600 | 1,200 | 2,400 |
| 처.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목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8호 | 600 | 1,200 | 2,400 |
| 커.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9호 | 600 | 1,200 | 2,400 |
| 터.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10호 | 600 | 1,200 | 2,400 |
| 퍼. 법 제35조제3항·제4항, 제36조제2항·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4항제9호 | 200 | 400 | 800 |
| 허.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11호 | 600 | 1,200 | 2,400 |
| 고. 법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12호 | 600 | 1,200 | 2,400 |
| 노. 법 제39조의3제3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12호의2 | 600 | 1,200 | 2,400 |
| 도. 법 제39조의4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보호위원회 및 전문기관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한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12호의3 | 600 | 1,200 | 2,400 |
| 로. 법 제3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명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12호의4 | 600 | 1,200 | 2,400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모. 법 제39조의7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동의 철회·열람·정정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12호의5 | 600 | 1,200 | 2,400 |
| 보. 법 제39조의7제3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와 제27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12호의6 | 600 | 1,200 | 2,400 |
| 소. 법 제39조의8제1항 본문(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12호의7 | 600 | 1,200 | 2,400 |
| 오. 법 제39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3항제1호 | 400 | 800 | 1,600 |
| 조. 법 제39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3항제2호 | 2,000 | | |
| 초. 법 제39조의1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공개하지 않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위탁·보관한 경우 | 법 제75조 제3항제3호 | 400 | 800 | 1,600 |
| 코. 법 제39조의12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12호의8 | 600 | 1,200 | 2,400 |
| 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75조 제4항제10호 | | | |
|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100 | 200 | 400 |
| 2)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 200 | 400 | 800 |
| 포.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75조 제4항제11호 | 200 | 400 | 800 |
| 호.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13호 | 600 | 1,200 | 2,400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8.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7호, 2020. 8. 11.,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되, 게재를 시작하는 날은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여야 한다.

1.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2. 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
3. 목적외이용등의 목적
4.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구성)

제3조(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련 장부 및 문서 서식) ① 법 제18조제2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2조제1항과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따른다.

③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2.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보유 현황
 - 나.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관련 사무실 및 설비 보유 현황
 - 다. 영 제37조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영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④ 법 제33조제1항과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⑤ 법 제33조제6항과 영 제37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에 따른다.



⑥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의 요구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에 따른다.

⑦ 법 제35조제5항과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및 일부열람의 통지, 법 제35조제3항 후단과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연기의 통지, 법 제35조제4항과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열람거절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에 따른다.

⑧ 법 제36조제6항과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 법 제37조제5항과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⑨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위임장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4조(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법 제22조제2항에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2.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3.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부칙 <제2020-7호, 2020. 8. 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 | | | |
|---|----------------------------|------|--|
|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 | | |
|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 | |
|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 담당자 | 소 속 | |
| | | 성 명 | |
| | | 전화번호 | |
|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 담당자 | 성 명 | |
| | | 소 속 | |
| | | 전화번호 | |
|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 | | |
|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 | | |
|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 | | |
|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 | | |
|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 |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 | | |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 란은 변경등록시에만 작성합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공공기관 명칭 | 주소 | 등록부서 | 전화번호 |
| 등록항목 | 등록정보 |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 | |
| 개인정보파일 명칭 | | | |
|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 | | |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 |
|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 | | |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 | |
|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받는 자 | | | |
|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 | | |
|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 | | |
|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 | | |
|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 | |
|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귀하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2개월 |
| 신청인 |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법인 설립일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수 | | |
| 명 |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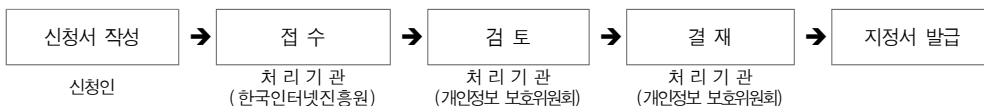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귀하

| | |
|------|---|
| 첨부서류 | <ol style="list-style-type: none">「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다음의 서류 가.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보유현황 나.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관련 사무실 및 설비 보유 현황 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개인정보위원회가 정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

처리절차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관련 사무실 및 설비 보유 현황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
| 소재지 | |

①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를 위한 설비를 갖춘 사무실

[] 있음 [] 없음

②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 설비

| 명칭 | 설비 등의 세부사항 | 수량 | 비고 |
|----|------------|----|----|
| | | | |
| | | | |
| | | | |

③ 기록 및 자료의 안전관리 설비

| 명칭 | 설비 등의 세부사항 | 수량 | 비고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①의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를 위한 설비를 갖춘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는 '있음'란에 [√] 표시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없음'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제 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서

1. 대 표 자:
2.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3. 법 인 명:
4. 주 소:
5. 전화번호:
6. 지정요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위의 법인을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하였으므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사항 신고서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 |
| 신고인 | 법인명 | | | |
| | 대표자명 | 생년월일 | | |
| | 주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
| (전화번호 :) | | | | |
| 변경일 | | | | |
| 구분 | 종 전 | 변 경 | | |
| 수행 인력 | | | | |
| 사무실 및 설비 | | | | |
| 평가 기관 양도·양수 또는 합병 등 | 종전 법인 | 법인명 | | |
| | | 대표자명 | 생년월일 | |
| | | 주소 | | |
| | (전화번호 :) | | | |
| | 변경 법인 | 법인명 | | |
| | | 대표자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 |
| (전화번호 :) | | | | |
| 법인명·주소·전화번호 및 대표자 변경 | |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귀하

| | |
|------|---|
| 첨부서류 | 1. 양도·양수 합병 등의 경우 양도·양수 또는 합병 계약서 등 사본 1부 2. 그 밖의 변경사항 증명서류 각 1부 |
|------|---|

유의사항

위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하거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이내 |
|------|--|-----------|--------|
| 정보주체 | 성 명 | 전 화 번 호 | |
| |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 대리인 | 성 명 | 전 화 번 호 | |
| | 생년월일 | 정보주체와의 관계 | |
| | 주 소 | | |
| 요구내용 |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귀하

작성 방법

1. '대리인' 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요구내용' 란은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 | | |
|---|--------------------------|--|--------|
| 요구 내용 | | | |
| 열람 일시 | | | 열람 장소 |
| 통지 내용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 | | |
| 열람 형태 및 방법 | 열람 형태 |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인화물 [] 기타 | |
| | 열람 방법 |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 |
| 납부 금액 | ①수수료 | ②우송료 | 계(①+②) |
| | 원 | | 원 |
| | 수수료 산정 명세 | | |
| 사 유 | | | |
| 이의제기방법 |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 |
|--|---------------------------|
| 요구 내용 | |
| <input type="checkbox"/> 정정·삭제 <input type="checkbox"/> 처리정지 조치 내용 | |
| <input type="checkbox"/> 정정·삭제 <input type="checkbox"/> 처리정지 결정 사유 | |
| 이의제기방법 |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발신명의 직인

유의사항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임 장

| | | |
|--------|------|-----------|
| 위임받는 자 | 성명 | 전 화 번 호 |
| | 생년월일 | 정보주체와의 관계 |
| | 주소 | |
| 위임자 | 성명 | 전화번호 |
| | 생년월일 | |
| | 주소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0000 귀하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 | |
|--------------|---|
| 발행일 | 2022년 1월 |
| 발행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집필책임 | 윤여진 과장(개인정보위) 유영관 사무관(개인정보위) 이정현 팀장(KISA) 주영선 선임(KISA) |
| 집필 및 법률감수 | 조수영 교수(숙명여대) 이창범 박사(연세대)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기윤도 변호사(법무법인 서울) |

본 사례집의 판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소유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위 및 진흥원의 허가 없이 이익을 위한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본 사례집 내용의 가공 및 이용 시 출처를 밝히는 경우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